

朝鮮王朝의 開港以後에 있어서의 行政近代化過程에 關한 研究(III)

金雲泰

院長·教授

第九章 乙未事變과 自主的 內政改革의 展開

第一節 第三次 金弘集內閣의 成立과 內政改革

前述한 바 있는 朴泳孝의 王妃弑害의 叛逆陰謀事件은 그 真相如何가 疑問이 되는바 있지만 어찌든 朴泳孝의 逐出에는 안으로는 王室 및 閔妃戚族系列와 유흥濬等의 金弘集系의 舊派와 그리고 大院君系列까지 음양으로 합세하여 각자의 利害打算에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며⁽¹⁾ 밖으로는 日本의 壓力과 三國干涉 특히 帝露와 美國등 列強의 公使들이介入하였을이 事實이었던 것이다.

도리켜 생각하면 日本은 겉으로는 韓國의 獨立主權을옹호한다고 내세우면서 기실 속으로는 侵略의 内政干涉과 가진 政略을 策動하다가 안으로는 이나라 國民上下의 反感을 사고 밖으로는 列強의 對韓干涉을 자초케 하였으며 끝내는 親日開化勢力基盤 마저도 育成하지 못한채 没落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서 國內外 政界가 그 方向을 摸索하고 있는 가운데 閔 5月 29日 井上公使가 다시 서울 政界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再赴任하자 國王 및 王妃와 頻繁히

(1) 李珥根 韓國史 現代篇 pp. 545-549.

接觸하여 金弘集를 살피면서 寄贈三百萬圓의 空手票를 發하고 王室을 政略す 金力 및 甘言利説로 농락한 나머지 전날의 疑惑을 풀고 다시금 密接한 關係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事態가 이와같이 好轉되자 그는 政界收拾의 첫 段階로서 內閣改編을 위한 人事干涉에着手하였다. 우선 6月 20日에 朴定陽總理밀에 安駒壽를 軍部大臣에, 懲戒解免했던 李允用을 警務使에 復職시키고, 李聖烈을 內閣總書에, 權在衡을 軍部協辦에, 李鼎煥을 度支部協辦에, 그리고 金弘集을 中樞院議長에 當分間 留任시키는 同時에, 魚允中을 同副議長에, 申箕善을 同一等議官에 각己 配置시키도록 하였으며 뒤이어 15日후인 7月 5일에 豫定했던 第三次 金弘集內閣이 비로소 成立되었으니 그 人事構成은 다음과 같다.⁽²⁾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内部大臣	朴定陽, 同協辦	俞吉濬
外部大臣	金允植	度支部大臣	沈相薰	
軍部大臣	安駒壽	法務大臣	徐光範	
學部大臣	李完用	農商工部大臣	金嘉鎮(8月 17日更迭 李範晉)	
宮內府大臣	李耕植	同協辦署理大臣	李範晉	
中樞院議長	魚允中(8月 13日解任)	同副議長	申箕善	

閣僚들의 背後關係를 통하여 新內閣의 政治的性格을 훑어 보면 先 金弘集과 金允植은 中道를 지키면서 親日傾向을 지니고 大院君系列과도 一脈相通한다는 保守的人物이며 度支部大臣 沈相薰은 戚族의 前衛者로서 頑強한 魚允中과 바꾸어 任用되었으며 戚族系의 李允用이 警務使로 再任되었고 軍部大臣 安駒壽는 親日로 出世하여 「閔八金二」 또는 「金皮閔肉」의 關係이며 또한 戚族系의 洪啓薰을 訓練聯隊長에 任命함으로서 財·兵·警의 三權을 宮中戚族系에 集結시켜 舊政府派를 孤立無援의 境地로 빠트렸다. 그리고 宮內部大臣 李載冕 同協辦 金宗漢을 罷免하고 戚族系의 李耕植 親露派의 李範晉으로 바꾸어 任用하였는바 이는 親露派의 首領格인 李範晉을 宮中에 配置하여 露國의 힘을 빌려 日本의 勢力を 驅逐하려는 政略임을 알 수 있다. 그斗에 徐光範은 親美派, 學部大臣 李完用은 李範晉과 더부터 親露派의 頭領으로 알려져 있으며 朴定陽과 李允用 李完用兄弟는 大院君系列에서 離脫하여 戚族에 아부해온 人物들이다. 따라서 第三次 金弘集內閣은 王室과 戚族을 위하여 優勢했고 對外的으로는 親日勢力이 奉制되며 親露派와 親美派가 優勢했다는 評이었다.⁽³⁾

그러나 모처럼 成立된 第三次 金弘集內閣도 日公使의 更迭과 井上公使의 所謂 贈與金 三百萬圓의 空手票가 저의(日本)政府에 의하여 休紙化되어 버리자 決定적인 重大暗影에 부딪쳤다. 即 空手票의 早期濫發을 달갑게 생각지 않은 日本政府는 三浦梧樓라는 武人出身의 外交 門外漢을 駐韓公使로 서둘러 發令하고 (6月 27日 發令 7月 13日着任) 同時に 井上에게는

(2) 菊池謙 著 近代朝鮮史下卷 昭和 15年 pp. 387-390. 韓國官報 開國 504年 6月 23日 7月 3, 5日
 (3) 菊池謙 著前揭書 pp. 389-390. 杉村著在韓苦心錄 pp. 164-165. 韓國史前揭書 pp. 569-570.

召還狀을 送達하여 早速한 歸國을促求한 것이니 國王과 新內閣의 威信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이판이 帝露公使「웨베르」C. Waeber를 中心한 歐美派의 策動이 차츰 뚜렷해져 간 것이다.

이와같이 戚族의 劢力이 뚜렸한 親露 親美的인 新內閣은 또 7月에 不時로 閔泳駿以下 數 10名의 戚族系列을 大量釋放하고 歸國을催促하였으며 이들 戚族近臣을 내세워 親日派를 모조리 除斥하는人事異動도 斷行하고 親露 親美政策을 露骨的으로 推進하는 同時に 甲午內政改革을 承認하고 舊制로 還元시키려는措置까지 서슴치 않은 것이다.

여기서 日本公使三浦는 王妃弑害와 政府顛覆의 惡辣한 隨謀를企圖하여 親露로 쓸리는 政權을 收奪할 唯一한 手段으로서 大院君의 再蹶起를 促求하였으며 成事後에 恭順치 않으리라고 憂慮하는 大院君을 事前부터 奉制해 두기 위하여 杉村書記官으로 하여금 嚴重한 4個條約文을 起草하여 大院君의 決意如何를 確認토록 하였다.⁽⁴⁾ 大院君은 深思한 끝에 이 密約을 承諾하였으니 凶計는 進捲되어 곧 王后閔氏가 日本人壯士들의 손에 慘殺당하는一大事件이 突發한 것이다. 이로서 國王은 入闕한 大院君과 三浦公使를 對面하고 이들의 意見을 들어 親日 一色으로 政府改造의 人事異動을 斷行하였으며 大院君에게 政事를 一任케하고 親露派의 李範晉, 李耕植, 李完用등을 朝廷으로 부터 駟逐하는 同時に 李載冕을 宮內大臣, 金允植을 外務大臣, 俞吉濬을 內部大臣, 魏允中을 度支大臣, 趙義淵을 軍部大臣, 鄭秉夏를 農商工部大臣, 徐光範을 學務大臣, 張博을 法務大臣으로, 그리고 警務使에 權灤鎮을 任命하여 没落하려가는 親日勢力의 挽回를 企圖하였다.⁽⁵⁾

그러나 露國勢力은 宮中·府中에 아직도 殘存하여 만만치 않은 氣勢이었다. 乙未事變은 國內外에 큰 衝擊을 주어 排日熱은 激烈을 極하였다. 더욱이 露國과 美國의 批判攻擊이 猛烈했기 때문에 日本政府도 당황하여 事變後 2週日餘의 9月 7日附로 三浦公使는 罷免되고 그의 一黨과 함께 本國에서 裁判에 回附되었으나 證據不充分이라 하여 모두 釋放하고 말았다.⁽⁶⁾ 이 듯 第三次 金弘集內閣은 成立當初부터 기구한 路程을 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내閣도 徒前과 다름없이 日公使나 日人顧問官이 마련해 놓고 施行을 要求하는 内政改革을 繼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乙未年 7月 5日 同內閣이 成立된 以來 同年 11月 15日(太陽曆採用 2日前)까지 官報로 內外에 頒布된 主要改革關係法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7月 15日字頒布 各道 兵營·水營 및 各鎮營 鎮堡를 廢止하는 件(勅令 140, 141, 142

(4) 杉村著 在韓苦心錄 前揭書 pp. 181-184. 菊池著 近代朝鮮史 前揭書 p.400. 4個條約章은

1. 大院君은 國王을 輔翼하여 오로지 宮中을 監督하되 一切 政務는 內閣에 맡겨 干涉하지 말 것

2. 金弘集, 魏允中, 金允植三人을 中心으로 政府를 改造하여 改革을 斷行토록 할 것.

3. 李載冕을 宮內大臣에, 金宗漢을 同協辦으로 任命할 것.

4. 李俊鎔을 三年間 日本에 留學시킬 것. 但每年 夏期歸國은 無妨함 등이다.

(5) 菊池著 前揭書 pp. 424-425.

(6) 鄭喬撰輯 韓國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高宗 32年 9月 9日 p. 122.

號)

- (2) 7月 1日頒布, 8月 1日施行, 小學校令(勅令第 145 號)
- (3) 7月 1日頒布, 8月 1日 施行, 官·公立小學校教員 및 漢城師範學校教員의 官等·俸給에 關한 件(勅令 146. 147 號) 官等은 最低 8等부터 最高 1等으로 區分하고, 俸給은 各等 1, 2 級으로 區分하여 最低 8等 2級俸의 月額 10元에 最高 1等 1級俸의 月額 35元임.
- (4) 7月 2日發表, 漢城師範學校 並附屬小學校規則(學部令 第 1 號). 特히 師範學校는 2年制 本科와 3個月制 速成科로 構成됨.
- (5) 7月 23日發表, 8月 1日부터 開城에 郵遞司設置(農商工部令 第 4 號)
- (6) 7月 28日發表, 漢城內에 官立小學校設置(學部令), 駐洞(8月 8日開學), 貞洞(8月 9日開學) 桂洞(8月 12日 開學) 紬洞(8月 13日 開學)
- (7) 8月 11日頒布, 朝臣以下의 服章式(勅令第 1 號). 數個月前에 親日內閣이 改革施行한 朝臣上下의 新服制를 親露戚族系內閣이 再改定하여 舊制로 還元시킨 措置로서 이것을 親露派의 代表格인 宮內府大臣署理 李範晉과 掌禮院卿 趙秉稷만이 內閣大臣과는 一言의 相議도 없이 節次를 無視하고 副署 頒布했을 뿐더러 그것도 勅令의 順番조차 無視하고 새삼 「勅令第 1 號」로 내다웠기 때문에相當한 物議를 일으켰다. 이 事實은 從前의 親日政府가 推進해 온 甲午內政改革는 親日行為로 看做하고 통틀어 否認해 치우는 것이라고 解釋되었다.
- (8) 9月 5日頒布施行, 稅務觀察官 및 各都稅務章程(勅令 161. 162 號)
- (9) 9月 5日頒布施行, 郡守官等·俸給에 關한 件. 全國의 23府 所管 各郡을 5等級으로 나누고 最低 5等郡守의 5級俸은 年額 600元으로 부터 最高一等郡守의 1級俸은 年額 1000元으로 定했음
- (10) 9月 9日頒布, 太陽曆始用에 關한 詔勅, 從來의 陰曆대신 太陽曆을 使用하되 開國 504年 11月 1'日을 開國 505年 1月 1日로 고쳐 시작한다는 詔勅으로서 뒤에 11月 15일의 建陽年號始用의 勅命과 더부여 매우 重要한 改革이라 하겠다.
- (11) 9月 13日頒布施行, 陸軍編制綱領. 但 陸軍을 中央의 親衛, 地方의 鎮衛의 二種으로 分할(勅令第 10 號)
- (12) 9月 13日頒布施行, 訓練隊廢止하고 親衛隊(또는 侍衛隊) 二大隊 設立 (勅令 169, 171 號)
- (13) 9月 29日頒布施行, 從前의 人定(사람이 자는시각 下午 10時) 罷漏(五更三點에 큰 쇠북을 33번 치는 일) 及 報時 更鼓를 廢止하고 正午와 子正에만 搞鐘기로함(布達第 4 號)
- (14) 10月 6日頒布, 開國 505年 1月 1日施行. 地方官廳에서 發하는 命令의 公布式(勅令 第 174 號)
- (15) 10月 6日頒布, 知事俸給을 1級俸 1200元 2級俸 1100元 3級俸 1000元으로 規定

(勅令 第 177 號)

- (16) 10月 7日發表 11月 1日施行, 種痘規則(內部令第 8 號)
- (17) 10月 9日發表, 10月 21日부터 忠州, 安東, 大邱, 東萊에 郵遞司設置 (農商工部令第 10 號)
- (18) 11月 10日頒布, 商務會議所規例施行에 必要한 命令은 農商工部大臣이 發할 수 있게 하는 法律 第 17 號
- (19) 11月 10日 頒布, 開國 505 年 1月 1日 施行, 宮內府官制改正(布達 第 5 號)
- (20) 11月 15日 頒布, 建陽年號 始用의 詔勅(官報開國 504 年 11月 15 日 號外)
詔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正朔을 이미 改正하여 太陽曆을 使用하다. 開國 505年부터 始作하여 年號를 建하되 一世一元으로 併定하여 우리 萬歲子孫으로 하여금 格守케 하다. 開國 504年 11月 15日(大臣副書).」

이와 같은 太陽曆採用의 詔勅이 내린 同日字官報의 彙報로 「年號를 建陽으로 建하는 件을 上奏하여 裁可하심을 經함」이라 發表함을 契機삼아 開國 505 年 11月 15日을 建陽元年 1月 1日로 起算하게 되었다.

(21) 11月 15日 頒布, 斷髮令 詔勅. 「朕이 髮을 斷하여 臣民에게 先하노니 翩有衆은 朕의 意를 互體하여 萬國과 더부리 前進하는 大業을 이루도록 하라. 開國 504 年 11月 15日(大臣副書).⁽⁷⁾

또 「日字로 内部大臣署理 俞吉濬은 다음과 같은 内部告示를 發表하였다. 「今此 斷髮함은 衛生에 利롭고 作事에 便利하며 我聖上階下께 옵서 富強의 政治를 圖謀하고자 率先垂行하여 示範을 表示하신 것이다. 무릇 우리 大朝鮮國民은 이와 같은 聖意를 받들어 衣冠制度를 다음과 같이 告示함. 一. 國服이 身에 在하니 衣冠은 國服期限前에 前例를 쭉아 全然 白色을 使用함. 一. 網巾을 廢止함. 一. 衣服制度는 外國의 制를 採用해도 無妨云云.」即 白色衣冠을 담습하되 網巾을 廢止하고 洋服을 着用해도 無妨하다는 告示內容이다.

(22) 建陽元年 1月 20日字 官報公表, 新年度 建陽元年 政府豫算表作成(官報第 226 號附錄)乙未年 11月 14日에 金弘集內閣은 閣議를 開備하고 度支部大臣 魚允中과 同顧問官 仁尾維茂를 中心으로 그동안 討議되던 新年度(建陽元年 太陽曆開國 505 年 1月 1日) 政府豫算을 審議決定하였으며 다음날 15일에는 總理大臣 以下 7部大臣이 連名上奏하여 國王의 裁可도 받았다. 이豫算表는 歲入 歲出의 一覽表를 對照하고 그것을 다시 款·項基準으로 分類한 것

(7) 太陽曆使用 및 年號의 建元과 아울러 斷髮令을 頒布하는 詔勅에 副署를 한 大臣은 다음과 같다.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外部大臣 金允植, 内部大臣署理 俞吉濬, 度支部大臣 魚允中, 軍部大臣署理 度支部大臣 魚允中, 農商工部大臣署理 鄭秉夏 등이 이러한 改革이 있은 後에 그 功勞에 보상하기 위해서인지 内部大臣署理 俞吉濬, 法部大臣署理 張博, 農商工部大臣署理 鄭秉夏 등을 모조리 大臣으로 昇進시키고 있다.

으로서 近代的⁽¹⁾ 政府豫算制度의 體制를 갖춘 것이었다.⁽⁸⁾(第二節(五)参照)

이렇듯 第三王 金弘集內閣은 7月 5日內閣 成立이후 11月 15일까지 近 4個餘月間에 걸쳐 王后弑害事變(乙未年 8月 20日), 大院君逐出, 廢王后復位, 그리고 王室近臣과 歐美派要人이 中心이 되어 反政府謀議를 劃策하다가 탄로된 春生門事件(同年 10月 12日)등의 一連의 重大危機를 치르면서도 日帝勢力의 支援밑에 그러한大小의 많은 改革政策을 頒布·施行하였다. 그 改革政策은 軍制改革, 學制改革, 地方郵遞司施設擴張, 稅務機關의 整備, 種痘實施, 各種官吏俸給改定, 近代的豫算制度의 採擇등을 위시하여 太陽曆採用, 建陽年號의 始用, 衣冠 및 服裝制度改革, 斷髮令과 正午·子正의 搤鍾制등 社會的慣例의 改革에 이르기 까지 廣範圍한 것이었으며 그 改革의 基本的精神은 大體로 甲午改革에 比하여 보다 主體의이고 自主的立場에서近代化改革을 推進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나 服章式을 勅令 第1號로 頒布하는 식으로 彻底하게 反日 그리고 反甲午改革의 立場에서 卽興的으로 斷行된 一部 復舊的 改革도 있었다. 여하간에 이들 改革중에서도 특히 太陽曆使用과 陰開國 505年(1896年) 11月 15日을 期하여 陽曆과 一世元制始用, 近代의豫算制度의 採擇 및 斷髮令과 衣冠制度의 改革등은 歷史의으로나 社會的으로 매우 重要한 意義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改革에는 흔히 社會的抵抗과 反撥이 뒤따르는 것이다. 乙未年 11月 15일에 前記한 斷髮令詔勅과 内部告示가 發表되자 그날 밤부터翌16日 아침에 걸쳐 갑자기 政府各部의 官僚를 위시하여 兵丁 및 巡檢등에 이르기까지 일체 삭발을 斷行케 하니 長安에 많은 物議와 不安을 起起하였다. 더욱이 乙未事變으로 國母가 日人凶漢에 의하여 畳害當하고 그消息이 바야흐로 全國에 알려져서 가뜩이나一般民心이 격분하고 있는 판국에 또다시 日帝의 壓力과 親日分子의 策動으로 오랜 因襲과 儒教觀念을 無視한 斷髮令을 突然히 施行하고 거기다 京鄉各地에 所謂 削頭官과 巡檢을 出動시키어 닥치는데로 百姓들의 削頭를 強行하였으니 舉國의一大混亂과 騷亂을 招來하고만 것이다. 그리고 斷髮令의 施行이 容易치 않자 政府는 建陽元年初부터 連달아 内部告示와 國王의 詔勅을 發하여 斷髮을 說得 또는 嘉獎하였지만 갈수록 民心은 離叛하여 급기야는 儒林을 先頭로한 各地方의 反日 및 反政府暴動을 誘發하여 官公署를 破壞하고 官吏를 殺害하려고 일어났으며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到處에서 義兵의 烽起를 보게 된 것이다. 即壬辰倭亂以後 300餘年間 잠잠하였던 儒林中心의 在野人士들은 國母에 대한 復讐와 斷髮令에 決死反對를 외치면서 國難을 自覺하고 다시금 義兵을 이르켜 肘起한 것이다. 이러한 地方의 義兵叛亂을 鎮壓코자 政府의 親衛隊主力까지 動員하였으니 首都서울의 守備는 매우 弱化된 것이며 이消息이 傳해지자 極秘裡에 親露派分子가 策動하여 마침내 國王의 俄館播遷과 뒤이어 金弘集 以下 政府大官의 殺害流血劇이 演出된 것이다. 即當時 웨벨(C. Waeber) 露

(8) 韓國官報 乙未年 7月 5日 부터 同年 11月 15일까지, 韓國季年史 史料叢書 第五上, 國史編纂委員會 p. 122-134. 本章 第二節에서當時의豫算節次와 財政의內容構造에 關하여 詳細히 檢討했음.

國公使는 絶好의 機會라 看做하고 먼저 露國公館의 警備強化를 口實삼아 仁川에碇泊中인 露國軍艦으로부터 壯兵 120名을 入城시켰고 春生門事件에 關聯되어 海外로 脫出했던 親露派의 李範晉이 密入國하여 웨델公使와 더불어 密議한 끝에 結局 國王은 李範晉의 奏請을 承諾하고 2月 11日(陰 12月 28日) 새벽에 女官으로 變裝한 國王과 王太子를 태운 두개의 輜子로 城門을 나와 말없이 露國公館으로 潛行移御한 것이다.⁽⁹⁾

國王은 露國公使와 李範晉, 李完用등의迎接을 받아 俄館으로 入御하자 즉시 警務官 安桓을 불러들여, 그에게 内閣總理大臣 金弘集, 内部大臣 楊吉濬, 軍部大臣 趙義淵, 農商工部大臣 鄭秉夏, 法部大臣 張博 등 五大臣을 逆賊으로 規定하고 時急히 捕殺하라고 命하였으며 이들 중 金弘集과 鄭秉夏는 警務廳으로 拘引되는途中 與奮한 群衆과 巡檢들의 손에 無慘히 打殺되었고 다른大臣들도 或은 日本에 亡命하거나 亂民에게 被殺되어 마침내 甲午年 6月以來로 持續되어온 親日政權은 完全히 没落당하고 그대신 앞서 春生門事件關係者로 貞洞의 露·美両國公館에 隱身潛伏中이던 親露·親美派要人들이 모조리 起用되어 新內閣을 組織하게 되었다.

第二節 大韓帝國의 成立과 獨立協會의 運動

俄館播臺의 當日인 1896年 2月 11日에 發令된 新內閣의 人事는 다음과 같다.

內閣總理大臣 金炳始(發令만 나고 未就任), 宮內府大臣 李載純(特旨赦免하고 發令만 나고 未就任), 内部大臣으로 總理大臣 및 宮內大臣 臨時署理兼務 朴定陽, 外部大臣으로 學部大臣 및 農商工部大臣 臨時署理兼務 李完用, 法部大臣 趙秉稷, 軍部大臣兼警務使 李允用(即日로 警務使는 解任), 度支部大臣 尹用求, 警務使 安駒壽(特旨赦免 發令)

다음날 同 12日에는 尹致昊가 特旨赦免되어 學部協辦으로 大臣署理를 兼務하고, 2月 22일에는 新內閣의 中心人物이며 親露派의 巨物인 李範晉이 法部大臣에 警務使와 高等裁判所裁判長을 兼任하고 法部大臣이던 趙秉稷은 農商工部大臣으로 轉任시켰으며, 2月 24일에는

(9) 大韓季年史上 前掲書 p. 137. 広江澤次郎「韓國時代の 露西亞活躍史」昭和 7年 p. 17.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 683-690. 353號文書「本來經國大典典門開閉(中樞院版 前掲書 p. 445) 規定하는 一應 守門將이 查問하는 法이었던 것인바當時 守門將은 얼마前부터 宮女에 限하여 乘橋出入을 許하고 誰何를 묻지 아니하는 慣例가 생겼다.」「國王은 乙未事變以來로 極度로 親黨을 嫌惡하고 宮殿은 항상 恐怖였기 때문에 남의 公館으로 移御避難을 決心한 것이었다」
「李範晉들은 平和手段에 의한 俄館播遷을 第一案으로 計劃하고, 이것이 失敗할 경우 第二案으로는 武力에 呼訴할 것을 前提하고 이미 忠淸·京畿·黃海道의 複負商輩에게 密令을 내려 11日을 期해 王宮護衛를 口實삼아 京畿에 參集토록 하였으므로 當日早朝까지 闕門前에 모여든 複負商들이 數千名에 達하였다고 한다」(韓國史前掲書 p. 733)

(10) 官報號外 1896年 2月 11日부터 同月 24日. 新內閣의 人事中. 李範晉은 露 9分의 人物로서 宮內大臣 李載純, 警務使 安駒壽등과 共同步調하여 英美派와 對峙했고 李完用은 美 7分 露 3分의 戀分을 지닌 親美派를 代表하는 主要人物로서 乙未事變을 契機로 歐美派를 斜合하여 貞洞俱絶部를 創立支配한 中心人物이다.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 pp. 497-498).

內閣總書로 學部參書官 李商在를 任命하였다.⁽¹⁰⁾ 이와같이 親露·親美派로 新內閣이 成立되자 이들은 韓內閣이 推進해온 여러가지 法令이나 政策들을 大體로 中止 또는 無視해 버렸다. 따라서 世界列強들의 帝國主義侵略政策에 弄絡當한 對外關係에 못지 않게 新內閣이 取하는 內政上의 모든 施策도 外壓으로 달미암아 實質上 何等의 主見이 없이 變化無常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갈피를 끗지 않게 한 것이다. 이제 親露政府는 從來의 日帝勢力を 排除하려는듯 그 制度와 法令을 드. 다시 뜯어 고치어 甲午以前으로 後退하는 傾向이 濃厚한가 하면 그것도 7分舊態에 3分新式으로 어느程度 自立의이고 主體的인 改革과 政策을 指向하려는 氣色도 엿보이었던 것이다. 그중에 代表의인 몇가지 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一) 親露 政策과 列強의 利權分割

俄館播遷⁹ 親露政府가 樹立되자 露公使는 軍隊로서 王을 保護하고 朝廷을 威壓하여 人事와 政令을 그의 그의 뜻대로 하였다. 新政府는 親日派를 몰아내고 各部의 日人顧問과 兵士의 訓練을 차단 日人武官을 全部 龍免하여 歸國시켰으나 그대신 露·英人の 顧問과 露人軍事敎官등을 重用하여 干涉을 甘受했고 한편 王國의 새「保護者」로 登場한 帝政露西亞와 其他歐美列強의 進出앞에 이 나라의 近代施設과 資源開發을 위한 重要利權이 分割·占據當하게 되었다. 當時 이 나라의 官民上下는 모두 國際政治의 知識이 貧弱해서 호시탐탐한 列強의 甘言利説을 看破하지 못했으므로 거센 帝露를 위시한 世界列強 政策앞에 犠牲될 수 밖에 없었다.

우선新政¹⁰는 親露一邊으로 기울어서 重要利權과 軍事 및 財政은勿論 政府人事까지 露公使의 意向을 尊重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露國政府로부터 1896年 5月 26日을 기하여 露帝「니콜라스」Nicholas二世의 戴冠式에 招請을 받게 되자 特命全權公使 閔泳煥⁽¹¹⁾과 首席隨行 尹致昊¹²·一行 5名을 特派하여⁽¹²⁾ 露國外相「로마노프」Lobanoff와의 사이에 照會에 대한 回答形式: 協約이 成立되었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朝鮮國王은 露國公使館에 滯在하는 동안 露國衛兵에 依해 護衛된다.
- ② 軍事敎官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近間 經驗 있는 高級의 露國將校를 京城에 派遣하여 韓國政府와의 協商을開始토록 한다. 派遣된 將校는 우선 이를 國王의 親衛兵編成問題에 從事토록 하고 이위에 以此 同樣의 經驗者를 露國에서 派遣하여 韓國經濟를 研究시켜 財政上 必要한 方法을 講究케 한다.
- ③ 韓國政府에 援助를 提供하게 될 露國顧問의 派遣問題는 前揭 第二條에 의하여 決定된 바에 따른다. 軍事 및 財政에 관한 前示 派遣員은 露國公使의 指導下에 뛰엇이 韓國政府顧問으로 服務케 한다.

(11) 宮內府特進官 閔泳煥은 閔族一門을 代表하는 人物로서 帝露를 背景삼아 王宮과 政府에 通하는 势力家이며 特히 李完用李範晋등과 맞서는 歐美派主要幹部이었다.

(12) 一行은 閔全權外로 學部協辦 尹致昊, 二等參事官 金道鍊, 三等參事官 金道一(露語通譯官) 및 從者 孫焉榮등이며, 이들은 4月 1日 釜浦에서 登程, 仁川에서 露國軍艦으로 上海, 日本, 北美^{뉴욕}, 英國^{倫敦}(太平洋橫斷), 獨逸, 波蘭을 經由하여 5月 19日 入露하고 5月 20日에 英府에 到着했으며 거기서 三個月滯在한 후 西伯利亞經由沿海州에서 船便으로 10月 20日에 仁川港에 歸還했다.(李瑄根編 韓國史前揭書 p. 757)

④ 韓國政府가進行할借款約定은韓國의經濟狀態와政府의必要如何가判明되는대로企圖될 것이다.

⑤ 露國政府는露國의陸上電信을韓國의電信線과連絡할것을承諾하고이에관한援助를施行할것이다.⁽¹³⁾

이러한協約과거의同時에政府는建陽元年4月에露人「니시첸스키」Nisichensky에게咸鏡北道慶源과鏡城의鑛山探掘權을許與하였고서울에는「비루코프」Capt. Birukoff露國大尉의주선으로露語學校를設立하여露語를education케하였으며또前記한協約또는密約에의하여1896年9月에는露人「브리네르」Bryner에게茂山과鴨綠江流域및鬱陵島의伐探權을許與하였고同年10月에는「푸챠타」大領Colonel putiata이露西亞將校3名과下士官10名을引率入京하여軍事教官이되어韓國軍의編成과訓練을擔當하게되었다.이로서이 나라軍隊의訓練을위하여開港以來로5회씩이나外國教官이바꾸어진셈이된다.⁽¹⁴⁾뿐만 아니라光武元年10月에는露國大藏省官吏「알렉세프」K. Alexeiff를度支部財政顧問兼海關總辦으로任命하고同年11月에는露人「레미노프」Reminoff를兵器敵顧問으로採用하는등1年間に韓露間의紐帶가크게進展되었다.

露國公使는이와같이國王의播遷을契機하여最大限自國의利益을圖謀하는동시에強敵인日本との勢力關係上西歐諸국과協力하지않을수없었으며이들에게이나라의노다지地方資源과鐵道動脈등많은利權을許可하였다.露國과더부터利權分配에앞장서서參與했던美國은1896年3月에美國人「모오스」J.R.Morse로하여금京仁鐵道敷設權을許可받게하고뒤이어4月에다시平安北道雲山의金鑛探掘權도獲得케함을비롯하여月尾島에貯油倉庫建設,서울의電車敷設과發電工場建設및水道施設建設등의重要利權이美國商社에게맡겨진것이다.한편英國의進出을一瞥하면1896年4月에英人Brown이財政顧問兼韓國總稅務司로서活躍하였고1897年2月에는英人「스트리풀링」A.B. Stripling이警務顧問官으로任用되어注目을끌은바있었으며1898年9月에는英國商社가廣範한鑛山探掘權

(13) 李首根編 韓國史前揭書 pp. 758-759,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前揭書 pp. 501-502. 한편當時露都에서締結하도록準備된韓露密約案은이露國의一方의權益保障을圖謀하도록計劃적으로成る것으로서그중에는①東萊絕影島의前洋은露國軍艦의留擊에一任하고外國의侵漁는露國에의하여防塞할것.②朝鮮軍兵練習에는露國士官으로서教練할것.③各部顧問官에는露國人을專聘할것.④咸鏡道의開礦은任意露國의開採에一任할것.⑤朝鮮財務不足時는露國으로부터借用할것.⑥軍器不足分은露國으로부터借入할것.⑦朝鮮政治는露國의行政組織에따라改革할것.⑧各港口事務는露國政府에서專行도록할것.⑨各國斗不美한事件이惹起시에는露國과協議할것.⑩年號를改定할것등이包含되었으며建陽元年11月1日附로軍部大臣閔泳煥,度支部大臣沈相薰,外部大臣李完用,內部大臣朴定陽등이副署를하였다.이密約案은後日露國이韓國에서正式으로獲得한權益과符合되는點이많다.

(14) 韓國의軍隊訓練은最初에는日人堀本中尉를傭聘하여日本式으로實施했고그후清國勢力이優勢해지자清國式의訓練을받고天津修約후에는美國式訓練을또清日戰爭當時부터는再次日本式으로變更되고이제親露政權이樹立되자이를露國式으로한것이다.이와같이軍隊訓練은外國의힘을빌려實施해온것은自主國防力의缺如를말해주는것으로서韓國을둘러싼列強角逐을示唆하는것이라하겠다.

을 獲得하였드. 그리고 佛蘭西는 한때 京義鐵道敷設權을, 또 獨逸은 鎳山採掘權을 獲得하였다. 특히 獨逸人「볼젠크」J.Bolljahn은 1898年 9月에 獨逸語學校를 設立經營한 바 있었다. 이와같이 鐵道敷設, 鎳山採掘, 森林伐採, 電氣施設等 近代施設을 西歐列強에게 헐값으로 넘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列強의 지나친 탐욕과 干涉이 그들相互간의 反撥을 招來하고 한편으로 韓國上下의 不信과 不平을 激化시키게 되자 日帝는 再進出의 好機를 스스로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歐美列強이 占有해 놓고도 消化못한 權益을 買收 移讓받고 同時에 新利權도 獲得함으로서 侵略의 발판을 漸次 굳쳐 간 것이다.⁽¹⁵⁾

(二) 稅金의 蕩減

國王이 俄館에 播遷한지 3日만에 詔書를 發하여 甲午年以來의 動亂과 親日政權의 有名無實한 開化施策으로 國民經濟의 破綻과 民生苦의 极심함을 내세워 吏民을 莫論하고 그동안 積滯된 未收未納의 貢稅등을 蕩減하고 民生苦의 輕減을 圖謀하였다. 그 詔書要旨는 「甲午年 6月以後로 國家가 文明이니 進步이니 하는 말만 있고 그 實은 없다…… 開國 503年 6月以前에 登記된 京外의 12문 吏逋(衙前이 공금을 쓴 빚)와 民의 未納을 一切 蕡減한다」는 것이었다.⁽¹⁶⁾

(三) 官制의 改定

國王은 먼저 地方官制의 改定에着手하여 甲午更張에 있어 從來의 全國 8道制를 23府制로 改編했던 것인바 이를 다시 改定하여 建陽元年 8月 4日 首都漢城府를 除한 全國의 行政區域을 13道 7府 331郡으로 區分하였으니 이 13道制의 行政區域은 1945年 解放까지 繼續되었다.⁽¹⁷⁾

道名	首府	所屬	觀察使	備考
京畿道	水原	4府34郡	吳益洙	4府는 開城, 江華, 廣州, 仁川
忠淸北道	忠州	17郡	李乾夏	
忠淸南道	公州	37郡	朴珪熙	
全羅北道	全州	26郡	尹昌燮	
全羅南道	光州	1牧32郡	尹雄烈	1牧은 濟州
慶尙北道	大邱	41郡	李聖烈	
慶尙南道	晋州	1府29郡	李恒儀	1府는 東萊
黃海道	海州	23郡	閔泳喆	
平安南道	平壤	23郡	李鍇永	
平安北道	定州	21郡	李容翊	
江原道	春川	26郡	趙秉弼	
咸鏡南道	咸興	1府13郡	李勝宇	1府는 德源
咸鏡北道	鏡城	1府 9郡	南廷哲	1府는 慶興

(15) 韓國痛史 第三編 第 4.5.6 章. 朝鮮鐵道史 第一卷 創始時代 pp. 74-49 55-56 206-248.

(16) 官報 建陽元年 2月 13日.

(17) 增補文獻備考下. 古典刊行會版 卷238. 職官考 25 pp. 785-786. 李瑄根 韓國史現代篇 pp. 849-850
建陽元年 8月 4日字 勅令 第36號. 官報 建陽元年 8月 6.7.10日

13 道 所屬 各郡은 5 等級으로 區分하여 管轄區域은 從來와 다름이 없었으며 또한 앞서 廢止했던 各關港場의 監理署도 復設하였다.

한편 이는 2月에 民望이 높은 申箕善을 南路宣諭使, 李道宰를 東路宣諭使로 派遣하여 義兵의 손으로 郡守가 被殺된 몇몇 地方의 民心을 宣撫케 했으며, 3月에는 金在豐을 警務使에, 申箕善을 旱部大臣, 4月에는 韓圭高을 法部大臣, 그리고 尹容善을 內閣總理大臣, 沈相薰을 度支部大臣 6月에는 李範晋을 駐美公使로 각각 任命하였로서 保守自主性이 있는 人物을 要職에 充員하여 君權을 擴張하였으며 9月 24일에는 政府官割를 改定하여 內閣을 다시 議政府라 稱하고, 總理大臣을 議政이라 改稱하고, 議政 밑에 參政, 賛政, 參贊등을 두고 各部大臣을 賛政이라 稱하는 등 傾色을 一掃하기에 注力하고 또한 會議規定을 改定하여 國王이 親臨하여 萬機를 摶措하게 되니 한동안 弱化되었던 專制的君主의 權力を 強化하는 同時에 政府閣議의 機能을 弱化시켜 甲午更張以前의 舊態로 다시금 後退還元코자 圖謀한 것이라고 하겠다.⁽¹⁸⁾

(四) 戶口調査制의 改定과 門牌制實施

建陽元年 9月에는 戶口調査規則을 改定하여 過去의 五家作統法을 다시 使用하도록 했으며 다만 戶數단을 늘여서 10戶로 1統을 作成케 하였다. 그 戶口調査施行細則의 重要內容을 보면 戶籍簿 作統表 門牌制등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戶籍簿 作成樣式를 보면 一定樣式의 戶籍表紙에 다 全國의 住所와 戶主의 年令, 本貫, 職業, 前居地 및 移居月日 그리고 家族欄에다는 戶主의 父, 生父, 祖, 曾祖, 外祖등과 同居 親族의 名單을, 나아가서는 寄口, 雇傭, 現存人口의 性別內譯, 家宅의 構造 및 間數등에 이르기까지 記載토록 한 것이며, 統表作成樣式을 보면 우선 全國의 住所과 統表의 號, 署長執綱姓名, 交番所尊位姓名 및 統首姓名을 記載하고 10個戶의 戶主 姓名 連記와 各戶主의 人口, 性別, 家宅間數 나아가서는 改籍事由 등을 記入도록 되었다. 그리고 門牌(또는 戶牌)는 每戶에 該當地名과 第何統 第何號와 戶主姓名 및 職業까지를 詳細하게 記載한 一定形式(長 5寸 5分 廣 2寸 5分)을 갖추워 玄關앞에 揭示토록 한 것이다.⁽¹⁹⁾ 우리나라에서 近世의 戶籍과 統班 및 門牌制度는 이 當時부터 更新, 施行되어 온 것이었다.

(五) 豊算制度와 財政構造

甲午第二回改革에서 制度된 會計法에 의하여 1895年(乙未年)부터 近代的意味에 있어서의 政府豫算制度가 採擇되고 1895年부터 繼續해서 政府豫算이 編成 執行되었음은 前章 第三節(四)에서 謂及한 바와 같거니와 이는 매우 重要的 改革이니 만큼 여기서 當時의 政府豫算

(18) 「官報」 建陽元年 9月 26日字領布凡 勅令第一號「議政府官制」, 大韓季年史上卷二 建陽元年丙申 pp. 1-143, 147.

(19) 官報 建陽元年 9月 4日字領布 勅令第 61號 同 8日字發表 内部令 第 8號(第 1款 第 1條, 第 2款 第 14條 第 3款 第 16條) 戶籍表統表의 全國의 住所는 漢城府 또는 何道, 何府·牧·郡·何坊面·契里 第何統 第何戶 樣式으로 되었고 決裁는 漢城判尹, 府尹, 牧使, 郡守가 記名署印하기로 되었다.

의 編成, 審議, 裁可公布, 執行節次 및 會計檢查節次와 그리고 豊算制度와 關聯하여 財政의 構造등에 關하여 더욱 詳細히 檢討해 보고자 한다.

1. 豊算의 編成節次— 各部大臣은 每年 9月末까지 翌年度의 所管豫算을 調製하여 度支部에 보내면 度支部(司計局)에서는 每年 10月末까지 歲入 歲出總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는 1月 1일~12월 31일) 閣議(乙未改革以後의 内閣會議 또는 議政府會議)에 提出하였다. ⁽²⁰⁾ 同 閣議에 提出된 政府豫算案은 그의 議決을 거쳐야 했다. 開國 504年 3月 25日字 勅令 第38號 内閣官制에 의하면 歲入歲出의 豊算及決算은 内閣會議의 議決을 거치도록 하고 (同官制 第8條 2項) 俄館播遷後 建陽元年 9月 24日 勅令第1號 議政府官制亦是 歲入歲出豫算及決算에 關한 事項은 議政府會議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同官制 第4條 6項) ⁽²¹⁾ 後者の 議政府官制에 있어서는 大君主陛下가 議政府會議에 親臨(或은 王太子殿下의 代臨)하도록 하였다(同官制 第1條) ⁽²²⁾

2. 豊算의 審議節次

當時에 있어서는 近代的인 立憲議會가 마련되지 않아 오늘날의 國民의 意思反映過程으로서의 立法府의 審議節次는 없었다. 다만 開國 504年 3月 25日字의 中樞院官制及 事務章程에 의하여 甲子改革時에 議政府에 所屬되었던 中樞院이 議政府에서 獨立되어 同官制 第一條에 “中樞院은 内閣의 諮詢을 應하야 다음 事項을 審查議定하는 處所라. 一. 法律勅令案. 二. 臨時로 内閣에서 諮詢하는 事項”이라고 規定함으로써 閣議에서 “議決된 事項을(豫算 決算을 包含해) 中樞院의 審議에 連附할 수 있는 法的素地는 마련되고 있었지만 事實面에서 政府의 豊算案을 中樞院에서 審議한例外는 없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設使 閣議에서 議決된 政府豫算案을 同中樞院會議의 審議에 附했다 하더라도 同院의 議長, 副議長 及各議官은 民選이 아니라 内閣總理大臣의 奏薦으로 「勅任官, 國家有功者, 政治 法律 理財의 學識이 있는者」中에서 皇帝가 選任하고 (同官制 第3條) 同中樞院은 議決機關이 아니라 内閣에 對한 諮詢機關이며 (同官制第1條) 内閣의 中樞院의 意思에 反해서 議案을 直接上奏, 皇帝의 裁可를 받아서 實施할 수 있는 點에서(同官制 第8條) 中樞院審議는 近代的인 立憲議會의 審議와는 本質의 差異가 있었다.

3. 豊算의 裁可公布

閣議에서 議決된 政府豫算案은 上奏後 皇帝의 裁可를 얻은後 確定되고 ⁽²³⁾ (議政府會議 議決後 上奏) 要하도록 한 事項은 光武 8年 3月 4日字 勅令 第1號 議政府官制改正件 第8條에 세로다(明文化效用) ⁽²⁴⁾ 施行前에 이를 公布하였다.

(20) 開國 504年 3月 20日字 法律 第2號 會計法 第9-10條. (朝鮮總監府, 現行韓國法典, 漢城, 明治 43年, pp. 925-1186)

(21) 議政府總務局, 法規類編, 繕一, 光武 2年, pp. 11-20.

(22) 前同.

(23) 上揭 會計法 第4條.

(24) 議政府官報, 第 2767號, 光武 8年 3月 7日字.

4. 豫算執行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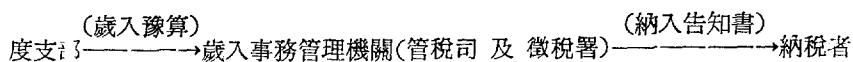
(A) 收入執行節次

洪範十項條에도 明示한 바와 같이 租稅는 必히 法律에 의거하여야 하며 會計法에서도 「租稅의 新額와 稅率의 變換은 一切 法律로서 定하고」「租稅·賦金·上納物 及 情費·雜費額은 法律·勅令 及 其他規程이 아니면 賦課徵收하지 못하도록」하였다.⁽²⁵⁾

그러나 法律이나 勅令은 實質上 制定節次가 똑같은 것으로서 民選議會가 없는 當時에 있어서는 總局 人民의 課稅同意權은 保障되지 못한 셈이 된다.

歲入執行節次의 概要是 다음과 같다. ⁽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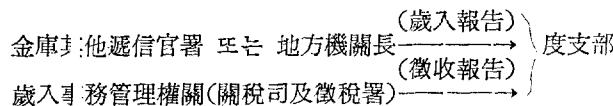
(1) 租賃納入通報



(2) 租納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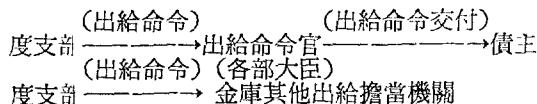
(3) 租稅徵收 及 歲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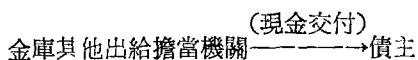
(B) 支付執行節次

一 단 形成된豫算의 執行節次要旨는 다음과 같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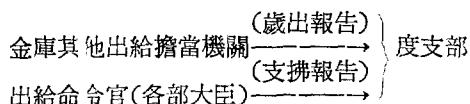
(1) 出給命令交付



(2) 出給



(3) 歲出 及 支拂報告



(25) 上揭計法 第1章 及 14章.

(26) 大韓¹政府財政顧問部編纂，大韓法規類纂，漢城，光武 11 年，附錄。上揭會計法 第 14-17 條、開國 504 年 4 月 5 日字法律第 71 號，收入條規。開國 504 年 3 月 26 日字，勅令第 56 號，管稅司：徵稅署官制。開國 504 年 4 月 7 日字，勅令第 75 項，金庫規則。

(27) 大韓國政府財政顧問部編纂，大韓法規類纂，漢城，光武11年，附錄：上揭會計法，第18-22條。

豫算各款의 金額은 相互間에 移用(挪用의 뜻)하지 못하여 額中各項의 金額을 移用可否 할 때에는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得하여야 하며⁽²⁸⁾ 各部大臣이 豫備金의 支出을 하고자 할 때에는 金額과 理由를 明示한 計算書를 作成하여 度支部大臣에게 請求하여야 하는데⁽²⁹⁾ 同豫備金의 支出에는 一一히 國王의 裁可를 얻어 執行하였다.⁽³⁰⁾

5. 會計檢査節次

(1) 決算調製; 度支部大臣은 歲入結末을 調査하고 各部大臣이 作成提出한 各部所管經費決算報告書를 檢查確定하여 歲入歲出總決算을 調製한 다음 閣議를 거쳐 國王의 裁可를 받았다⁽³¹⁾

6. 會計 檢査

當時 會計法 第 24 條 後項에 「各部所管經費決算報告書를 檢查하는 規程은 法律로서 定함」이라고 하여 會計檢査에 關한 것은 別途의 法律로서 定하기로 되었으나 이에 對한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光武 10 年 3 月 21 日字 勅令 第 11 號 度支部官制中 改正件에 의하여 同部에 檢査局을 新設하여 (第 4 條) 同局으로 하여금 會計檢査機能을 擔當케 하고(同官制第 9 條)⁽³²⁾ 光武 10 年 7 月 19 日字로 勅令 第 34 號로 會計檢査規程을 마련하여 會計檢査를 하도록 하였는데⁽³³⁾ (이것 亦是 行政府에서 어느 程度 獨立된 獨自의인 會計檢査가 아니고 度支部內의 一局으로 하여금 施行케 한 것에 不過하였음.) 事實上 其前에는 會計檢査機能이 空白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光武 9 年 2 月 勅令 第 19 號 度支部官制改正에 의하여 度支部 司計局 内에 監查課를 두어 經費證憑書類에 關한 檢査를 하였을 뿐이었다.

6. 財政의 內容構造

1894 年 甲午改革時에 物納制가 金納制로 바꾸어지고 王朝後期에 접어들어 가면서 土地의 私有化現象이 普遍化되어 土地自體의 財政政策의 意義가 減殺됨에 따라서 從來 財政手段이 土地, 現物 金錢, 徵役等으로 多元化되어 있었던 것이 「金錢」이란 統一的 計量手段에 의하여 一元化되고 特히 1895 年부터 採擇된 近代的인 政府豫算制度로 因하여 政府財政의 骨體가 政府豫算에 集約化되게 되었다.

1895~1904 年度까지의 政府豫算의 內容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895 年度

同年度의豫算은 同年 陰 4 月末에 議政府會議에서 通過되었는데⁽³⁴⁾ 그 內容은 다음과 같

開國 504 年 4 月 5 日字, 勅令第 72 號, 支出條規. 開國 504 年 4 月 7 日字, 勅令第 75 號, 金庫規則.

(28) 上揭 會計法 第 12 條.

(29) 上揭 會計法 第 13, 第 13-2 條.

(30) 豫備金支出의 上奏裁可公布(例: 內閣記錄局官報課 官報 第 35, 38, 44, 46 等 豫算外豫備費支出)

(31) 上揭 會計法 第 4, 23, 24 條.

(32) 議政府官報, 第 3409 號. 光武 10 年 3 月 24 日字.

(33) 議政府官報, 第 3518 號, 光武 10 年 7 月 30 日字.

(34) 繢晴食史, 卷七, 浮陽行遺日記, 高宗 32 年, 乙未 4 月 27, 28 日案. (國史編纂委員會版 韓國史料叢書, 第 11, 上 p. 360.

다. (이) 1896 年度의 豫算과 같이 會計法이 定한 諸關係書類가 具備된 豫算書形式은 갖추지 못하고 다만 歲入·歲出의 規模를 種別로 計定한 것에 不過했다).

1895 年度 政府豫算

單位: 元

歲用			入額	歲用			出額
經 常 稅 部	租	地稅	1,009,908	王室費	384,615		
		雜稅	67,001	外 內 度 法	35,435		
		人蔘稅	150,000	支 部	525,198		
		海魚稅	330,678	部	1,694,518		
		小計	1,557,587	部	41,806		
借入金			3,000,000(其中 89,000 은 既支出)	學 軍 農 警 商 務 小	70,349 321,772 50,977 120,240 3,244,910		
臨時部 豫備金 合計						60,000 500,000 3,804,910	

資料 朴東緒, 韓國官僚制度의 歷史的 展開 韓國研究圖書館, 서울, 1961, pp. 39-40 (原譯:開國 504 年 豫算表, 漢城 度支部, 1895)

(2) 1896 年度

이해의 豫算은 同年 陰 1月 20 日官報에 公布되었는데 同豫算書는 序文, 歲入歲出總豫算說明, 歲入歲出豫算, 歲入豫算說明書 및 歲出豫算說明書로 構成되었다.豫算額은 다음과 같다.

1896 年度 豫算

單位: 元

(1) 歲入

額	項	金額
租稅		2,428,033
	地稅 戶 布 雜 人 砂 港 既往年度所屬收入	1,477,681 221,338 9,132 150,000 10,000 429,882 130,000
雜 收 入 鑄 造 貨 前半度歲計剩餘 計		5,000 1,282,450 1,093,927 4,809,410

(2) 歳出

項別金額은 省略

部別	所管	款	金額
經常部	王室費	王室費	500,000
	外 務	本廳在外公館	27,672 44,260
		計	71,932
	內 部	內部本廳 地方各府廳 地方各郡廳 警務本廳 警務廳監獄署 醫學校費 醫學校附屬病院費 種痘醫養成所費 牛痘種繼易費 圓丘祭祀及修理費 地方官赴任旅費	77,986 333,022 823,308 155,005 17,180 6,906 14,353 1,368 2,866 940 13,696
		計	1,146,630
	度 支 部	度支部本廳 內閣 中樞院 書所 稅關 典圜局 國債 功臣祿 中央交際費 中央機密費 國庫金搬運金	119,238 29,799 14,987 461 80,035 782,450 497,381 1,630 8,600 20,000 185,525
		計	1,740,106
	軍 部	軍部本廳 軍部事費	87,519 940,882
		計	1,028,401
法 部	法 部	法部本廳 地方各部檢事試補俸給	39,674 6,300
		日本留學生費	1,320
		計	47,294
	學 部	學部本廳 觀象所 學校費 地方學校補助費	35,477 3,430 31,219 16,200

	留學生費	40,426
	計	126,752
農商工部	農商工部本廳 事業費 計	36,094 147,322 183,419
歲出經常部合計		5,944,531
國葬費	國葬費	70,000
臨時部	漢城內道路修理費 地方監獄置臨時修築費 地方警察賞與費 警務廳所屬所新營費 計	15,000 2,200 1,000 900 19,100
軍部	修政殿內排設費 典圖局建築及器機費 苗公廬管理費 計	2,500 270,000 10,000 282,500
軍部	兵器庫修築費	700
	歲出臨時部合計	372,300
	豫備金	800,000
	歲出總計	6,316,831

(3) 1891 年度

同年度의 具體的인 豫算內容은 未詳이나 豫算이 編成執行되었던 것은 事實이며⁽³⁵⁾ 總規模는 歲入이 4,191,192 元, 歲出이 4,190,427 元이었다.⁽³⁶⁾

(4) 1893 年度

1898 年 1 月 12 日에 上奏된 豫算(公布日字는 未詳)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部別	項別金額은 省略			單位:元
	歲款	入金額	歲款	
經常部	租稅	3,779,316	官內府	560,000
	雜收入	40,000	議政府	32,016
	鑄造貨	200,000	外 部	132,396
	前年度移越	508,160	內 部	1,225,655
			財 部	892,197
			法 部	46,853
			學 部	89,340
			農工商部	189,230
	計	4,527,476	軍 部	1,251,745
			計	4,419,432

臨時部					106,098
合計		4,527,476			4,525,530

資料: The Trilingual Press, The Korean Repository, Vol. V, No. 3, Seoul, 1898, pp. 70-74.

(5) 1899 年度

이해의 豊算規模는 歲入이 6,473,222 元, 歲出이 6,471,132 元이었다. ⁽³⁷⁾

(內容構造는 未詳)

(6) 1900 年度

同年에도 豊算이 編成 執行되었으며 ⁽³⁸⁾ (內容構造는 未詳) 規模는 歲入이 6,162,796 元, 歲出이 6,161,871 元이었다. ⁽³⁹⁾

(6) 1901 年度 ~ 1902 年度 豊算

部別	項別金額은 省略			單位: 圓		
	歲 款	入 1901 年	1902 年	歲 款	1901 年	1902 年
經濟部	租 稅	8,296,473	6,808,530	皇 室 費	900,000	900,000
	雜 收 入	90,000	110,000	宮 內 府	61,039	257,017
	壽 造 貨	350,000	350,000	元 帥 府	73,242	65,275
	前半度歲計剩餘	342,983	318,000	議 政 府	38,298	37,510
				內 部	982,599	973,410
				外 部	244,522	280,038
				度 支 部	764,324	578,736
				軍 部	3,594,911	2,786,290
				法 部	56,774	57,520
				警 部	426,039	276,154
				學 部	184,983	167,730
				農 商 工 部	70,117	40,892
				中 樞 院	17,152	17,228
				扈 衛 隊	56,032	
				量 地 門	129,664	7,824
				表 黨 院	22,345	18,457
				通 信 院	398,080	374,910
				惠 民 院		6,446
				地 契 門		22,108
	計	9,079,456	7,586,537	計	8,020,150	6,932,037
臨時部					58,531	53,840
豫備費					1,000,000	600,000
合計					9,078,681	7,585,877

資料: 京城新聞, 光武 5 年 3 月分(1901 年度)

光武 6 年 3 月分(1902 年度)

(7) 1903 年度

單位: 圓

	歲 款	入 金 額	歲 機 關 別	出 金 額
經	歲租	10,266,115	皇室費	1,000,000
	雜收入	150,000	宮內府	261,032
	籌造貨	350,000	耆老所	24,026
常			元帥府	65,853
			議政府	38,730
部			中樞院	18,580
			扈衛隊	58,099
			表勲院	20,993
			通信院	461,935
			地契衙門	71,018
			內部	980,533
			外部	278,198
			度支部	1,665,716
			軍部	4,123,582
			法部	56,702
			警務廳	361,331
			學部	164,743
			農商工部	46,300
	計	10,766,115	計	9,697,371
臨時部				53,120
豫備金				1,015,000
合時部		10,766,115		10,765,491

(8) 1904 年度의 豫算亦是 編成된 것은 確實하나⁽⁴⁰⁾ 그의 內容은 未詳이다.

1895~1905 年까지의 歲入歲出의 總規模와 變化 推移를 보면 다음表와 같다.

1895~1905 年의 豫算規模(一般會計本豫算) 當時特別會計及追加豫算은 編成되지 않았음.

區分	1895	96	97	98	99	1900	01	02	03	04	05
歲	4,468, 87	4,809, 410	4,191, 192	4,527, 476	6,473, 222	6,162, 796	9,079, 456	7,586, 537	10,76 6,115		7,480, 287
臨時費											
入	4,468, 87	4,809, 410	4,191, 192	4,527, 476	6,473, 222	6,162, 796	9,079, 456	7,586, 537	10,76 6,115	?	7,480, 287
計											

(35) The Trilingual Press, The Korean Repository, Vol. v., No. 3.

(36) 朝鮮總督府, 李朝時代の財政, 京城, 昭和 12 年, pp. 431-2.

(37) 前后.

(38) 皇朝新聞, 光武 4 年 9 月 7 日, 10 月 1 日, 11 月 9 日, 12 月 22 日字.

(39) 朝鮮總督府, 上揭書, pp. 431-2.

(40) 皇朝新聞, 光武 8 年 3 月 16 日字.

歲	經常費	3,244, 910	5,944, 531	3,977, 647	4,419, 432	6,428, 229	6,058, 972	8,020, 150	6,932, 037	9,697, 371	7,123, 815
	臨時費	6 ^t , 000	372, 300	222, 780	106, 098	42, 903	102, 899	58, 531	53, 840	53, 120	2,433, 021
	豫備金	500, 000	800, 000					1,000, 000	600, 000	1,015, 000	650, 000
出	計	3,804, 310	6,316, 831	4,190, 427	4,525, 530	6,471, 132	6,161, 871	9,078, 681	7,585, 877	10,76 5,491	?

備 考 單位는 1895~1900년은 「元」이며, 1901~1905년은 「圓」이나 同貨幣價值는同一함。(1907년에는 「圓」으로改稱되었음.) 1894년의 貨幣發行章程은 五兩銀을 本位貨로 하였으나 ○는「元」에相當하였으며 1901년 2月 金本位制採擇時 貨幣單位가 「圓」으로 바꾸어진것임

以上과 같이 俄館播遷 即後부터 反日 反開化의 義兵蜂起와 이에 대한 政府의 宣撫工作 그리고 稅金의 蕩減布告에 뒤이어 王室과 政府를 中心으로 舊制度의 復設과 舊典의 復活, 新制度의 改廢가 反復되는 등 從前의 開化政策에 대한 反動運動이 이구석 저구석에서 摧毀되는가 하면 開化黨系人士의 門牌를 探索調查 해 가지고 그들을 暗殺하려는 反開化派의 陰謀計劃과 이와 類似한 要人暗殺과 政府顛覆의 陰謀事件등이 連發되기도 하고⁽⁴¹⁾ 다른한편 俄公館에 雇用된 露語通譯官 金鴻陸⁽⁴²⁾과 其他の 奸臣 및 腐敗官吏들은近代化의 國家施策을 故意로 妨害해가면서 強의 愚弄에迎合하고 國家의 權益을 割讓하는 政治去來를 서슴치 않는 것이다. 이와주 이 内外의 政治가 混亂하고 衰退일로의 王朝가 弄絡當하며 유린當하는 서글픈 事態에 대하여 國民의 自覺과 獨立運動이 움터서 展開되었음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었다. 王室이 舊態依然하게 國難打開의 對策과 能力이 없었고 兩班支配階層인들 腐敗의 極에 達하고 時代에 투영어진 封建的意識에 사로잡히고 있는 동안에 오로지 文明開化와 自強獨立이라는 近代意識과 自覺했던 少數의 先驅者와 그뒤를 따라 躍起한 一團의 青年들이 뭉쳐서 民衆과 더불어 自主獨立의 救國運動을 展開한 것이다.

일찌기 美國에서 亡命生活 10餘年만에 歸國한(1896年 1月) 徐載弼은當時의 金弘集內閣의 中樞院顧問官으로서 政府相對로 內政改革의 좋은 方案과 意見을 勸告하는 한편 民衆의 指導啓蒙을 위하여 心血을 傾注하였다.例컨데 俄館播遷後 高宗께 拜謁하여 還宮하기를 懇切히 進言한 3도 그가 처음으로 敢行한 愛國行爲로서當時의 情況으로는 勇斷이 必要한 일이었다.⁽⁴³⁾ 그는 우선 民衆을 啓蒙宣傳하기 위하여 獨立新聞을 刊行하였다. 即 政府로 부터

(41) 韓國季半史上, 卷二 前揭書 pp. 147-149 「李世鎮등의 流刑」 pp. 157-158. 「宋鎮用등의 政府顛覆計劃」参照。

(42) 韓國季半史上, 卷二 前揭書 pp. 151, 232-233. 俄館-室內의 國政은 露國護衛兵의 嚴重한 監視下에서 1. 時任大臣과 元老重臣이라 하여도 王의 召命없이는出入이 不能했으며 王의側近에는 海參衛 2. 賤人으로成長한 咸北人 學務協辦兼露語通譯官인 金鴻陸이 常時侍從하여 國事에 깊이 干預하였다. 金은 法務大臣 李範晉, 宮內大臣 李載純등과 더부러 人の張幕을 펴고 外部와의 通信交通을 統制하였다. 政府는 金에게 一躍 侍從院侍從의 顯職을 주었다.(正月 4日)

(43) 徐載弼專士自敘傳 p. 211.

5,000圓⁴⁴ 國庫補助金과 貞洞所在 政府建物을 빌려서 「독립신문」이란 題號로 純우리말 新聞의 發刊에着手한후 1896年 4月 7日을 期하여 純한글版과 英文版의 「독립신문」 The Independent 第一號를 創刊한 것이며 이는 漸次 數많은 民衆의 愛讀者를 確保하고 官權濫用의 弊習을 揭發하여 白日下에 暴露하는가 하면 國民에게 合理的인 教育과 改革에 대한 희망을 더욱 推進시켰으며 民主言論의 真實한 先驅로서 이 나라 祖國文化와 民族生活에 미친 貢獻은 後世에 길이 빛나고 헤아릴 수 없을 程度로 偉大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신문」이 論說을 通하여 近代思想과 民主政治, 道伯·郡守의 民選制, 政府官吏의 公僕으로서의 責務, 그리고 女權伸張, 國民教育의 重要性, 迷信打破와 社會的慣行의近代化등을 主張하자 學部大臣 申箕善을 위시한 一部 頑固한 保守反動勢力의 反撥을 惹起하게 된 것이며⁽⁴⁴⁾ 이러한 反動勢力を 물리치고 自主民主獨立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建陽元年 7月 2日에 獨立協會를 結成하는 同時에 救國的인 紀念事業으로 獨立門과 獨立公園을 建設키로 하였다. 여기서 獨立協會의 役員⁽⁴⁵⁾들은 全國民앞에 率先垂範하기 위하여 獨立門등의 紀念事業基金+自進寄附하는 동시 獨립신문의 影響力を 活用하여 官·民·學生 및 外國人們의 热烈한 關心과 補助를 얻는데 成功함으로서 1896年 11月 21日에 邀恩門자리에 獨立門을 세우고 또한 1897年 5月에는 그 附近에 있던 옛날의 慕華館建物을 改修하며 獨立館을 마련한 것이다.⁽⁴⁶⁾ 이와같은 一連의 救國獨立運動은 徐載弼博士의 指導下에서 「독립신문」의 主導의 影響力밀이 推進된 것이지만 이는 創刊된지 不過 數個月밖에 안되는 「독립신문」의 한국민중속에 波及된 影響力이 매우 커음을 立證하거나와 그보다도 그동안 獨立自主와近代化意識이 한국민중속에 成長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獨立協會는 徐載弼博士의 指導下에서 獨立會館+中心으로 協會員相對로 近代政治의 啓蒙과 基礎訓練 및 討論과 雄辯術을 가르치고 自主獨立精神을 鼓吹한 것이며 때로는 列強의 角逐에 놓간當하는 昏迷한 政府를 喻諭하면서近代化政策을 激勵하기도 했다. 이로서 獨立協會는 漸次 그 組織基盤을 擴充해 나가면서 果敢한 政治運動에 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다. 이즈음에 獨立協會와 朝臣 및 뜻있는 國民들의 上疏 또는 輿論에 못이겨 國王은 드디어 俄館으로 부터 새로 修理한 慶運宮으로 還宮하게 되었으니 이는 곳 播遷後 滿 1年 10日만인 建陽 2年 2月 20일의 일이었다. 還宮後 獨立協會는 좀 더 活氣를 띠고 獨立國家의 威信을 向上시키려는 努力を 했으며 朝臣 및 一般國民

(44) 「독립신문」 建陽元年 4月 14, 16, 21, 25일, 5月 7, 23일, 6月, 4, 6, 11日 論說.

(45) 鄭春韓國季年史上. 卷 2 前揭書 p. 146., 獨立協會創設發起人은 安鴻壽, 李完用(外務大臣), 金嘉鎮, 李允用, 金宗漢, 權在衡, 高永喜, 閔商鎬, 李采淵, 李商在(內閣總務局長), 玄興澤, 金玗鉉, 李建鎬, 南宮愬等 30餘名이고 그 役員으로서 協會議長 兼 會計長 安鴻壽, 委員長 李完用, 委員 金嘉鎮等 8名, 간사원에 송현빈, 남궁억, 오세창 등 10名, 會員은 無定數이며, 徐載弼은 主導人物이지만 美國의 國籍을 가진 關係로 外國人을 自處하여 會員이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美人 underwood, 아펜젤러의 後援을 받고 또 日本留學生과 日本亡命中의 朴泳孝一派가 加擔으로서 그 新國民運動으로서의 勢力を 擴充했다.

(46) 大韓季年史上 前揭書 pp. 151, 156

의 昂揚된 國家意識의 呼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政府와 各界各層의 稱帝建元에 關한 慸切했고 또한 그 氣運이 高調化된 것이며 마치 1896年 8月 29日 法部協辦 權在衡이 「國際公法上 王과 帝는 自主獨立國家에서 同一同等의 尊稱이므로 이를 朝鮮에 適用하여도 조금도 支障이 없는 일이라」는 政府의 解說을 밝혔고⁽⁴⁷⁾ 이어 다음날 金斗秉의 上疏에서 大君主의 稱號는 古典과 舊章에 없는 말이니 이를 皇帝로 改稱할 것을 建議하고 9月 5日에 議政大臣 沈順澤은 三韓統一의 大業을 이어받은 朝鮮이 오늘날 皇帝라 稱하고 帝國이라 부름은 天下의 數라고 高唱하였다. 이리하여 政府는 우선 建陽을 光武로 改正하여 光武元年 (1897) 8月 17日 부터 施行하기로 하고 同年 10月 12日 (陰 9月 17日) 皇帝即位式을 新築된 圓邱壇에서 舉行하고 國號도 大韓이라 일컬어 獨立帝國임을 世界萬邦에 宣布함으로서 大韓帝國은 誕生된 것이었다.⁽⁴⁸⁾

또한 光武 3年(1899年) 8月 17日에는 勅令으로서 大韓國制九條⁽⁴⁹⁾를 發布하여 獨立國家의 國制로서 政治 및 君權의 性格을 밝히고 이를 臣民으로 하여금 遵守케 하였다. 法規校正所 總裁 尹容善, 議定官 徐正淳등이 王旨를 받들어 起案하여 天下에 領示한 이 國制는 自立政治와 極端한 專制主義思想에서 制定된 것이니 만큼 世界의 새로운 政治思想과는 너무나 距離가 뒤떠자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根本自主獨立의 形式과 體面만을 內外에 갖추었을뿐 新生大韓帝國은 앞에서도

(47)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卷 p. 480.

(48) 大韓季年史上 前揭書 pp. 612-168, 171. 菊池 近代朝鮮史下前揭書 p. 514. 稱帝建元은 이에 乙未事變直後에도 施行코자 했으나當時의 歐美各公使가 反對해서 保留되어 온 것으로서 이제 內外情勢가 달라져서 이처럼 實現을 보게된 것이다. 即位式을 舉行한 다음날 13日에는當時의 駐韓公使도 거의 全部가 皇帝에게 進賀했고 11月 21日에는 앞서 獯害當한 閔后의 國葬을 끝 어오다가 皇后의 禮를 갖추게 하자 列國代表가 參列함으로서 自主獨立의 氣勢를 읊리고 뒤이여 日, 韓, 美, 英 등 各國政府도 이 事實을 承認하였고 貞洞에 있는 歐美人的 社交俱樂部까지 獨立俱樂部라 改稱하기에 이르고 翌年 2月에는 美國政府가 駐韓總領事館을 公使館으로 升格시켰다. 또한 이를 契機로 王后를 皇后, 王太子를 皇太子라 尊稱되었다.

(49) 大韓季年史下 卷五 光武三年 乙亥 pp. 24-25. 姜志元 近代朝鮮政治史 1950. 大學生活社 pp. 326-327.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하는 自主獨立帝國이다.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 500年을 傳來하고 由後 萬世에 亘하여 不變한 專制政治다.

第三條 大韓國 大皇帝는 無限의 君權 公法을 享有한다.

第四條 大韓國民이 大皇帝의 享有한 君權을 侵損하는 行爲가 있을 때는 그 已行・未行을 不問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證한다.

第五條 大韓國 大皇帝는 國內陸海軍을 統帥하고 그 編制를 定하며 戒嚴或은 解嚴을 命한다.

第六條 大韓大皇帝는 法律을 制定하고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며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模倣해서 國內法律을 改定하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等을 命한다.

第七條 大韓國 大皇帝는 行政各府의 官制와 文武官의 奉給을 制定하며 或은 改正하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勅令을 發한다.

第八條 大韓國 大皇帝는 文武官의 賚陟 任免을 行하고 爵位 勳章과 其他 榮典을 授與 或은 遷奪한다.

第九條 大韓國 大皇帝는 各條約國에 使臣을 派遣 駐屯케 하고 宣戰講和와 諸般條約을 締結한다

論及한 바⁴⁹나 같이依然히列強의 농락을 면할 수가 없었다. 특히帝露의 軍事 財政 및 政府人事에 대한干涉을 받고 英國海軍의 Brown復職을促求하는 軍事的示威로서 巨文鳥가 占據하는가하면 重要利權과 公共施設이 列強의 마수에 함부로 침해 당하게되니 無責任하고 無能한 皇室과 政府에 대하여 獨立協會의 월기 항쟁을 초래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며 여기에 獨立協會는 좀더 과감하게 政府를 규탄하면서 우선 帝露의 度支部財政顧問官과 軍部敎官의 不當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前例에 없던 「萬民共同會」의 이름아래 光武二年 二月九日에 長安市市民을動員시켜 全面的인 國民抗爭을 展開하였다. 이 「萬民共同會」는 實로 近代의 우리나라 民主政治運動의 街頭集會의 先驅를 이루는 歷史的인 集會이었다. 鐘路內 거리에서開催한 市民蹶起大會는 事前에 徐載弼, 鄭喬등이 秘密裡에 計劃한 것으로 當日, 李承晚 梁弘厚등 热誠會員이 登壇하여 热辯을 토하면서 帝露의 財政과 兵權의 不當한 干涉을 규탄하고 政府當局에 建議書를 보내여 主權守護를 要請할 것을 動議케하니 會衆全員이 拍手로써 이를 採擇決議하는 節次를 取하였으며 當時의 外部 및 政府當局은 이 萬民共同會의 이름으로 提起된 建議書를 民論으로서 尊重하여 許可하고 이를 露公使에게 手交하니 露公使는 本國政府에 報告했으며 비록 帝露政府라 해도 이러한 萬民共同의 抗爭만은 가볍게 無視할 수가 없었기에 財政顧問과 軍事敎官의 撤收는勿論하고 設立한지 不過數個月의 韓露銀行도 終局 閉鎖키로 한 것이다.⁽⁵⁰⁾

이와같이 처음 展開한 萬民共同의 抗爭이 큰 政治的成果를 거두게 되자 獨立協會의 政治運動에 대한 國民의 信賴와 期待는 沖天의 势로 드높아진 反面에 政府高官이나 一部奸臣輩들은 그동간의 失策을反省하기는 고사하고 이를 시기하고 중상모략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獨立協會의 運動이 皇室과 政府에 대한 一大危脅이라고 보고 특히 日本亡命中의 朴泳孝一派의 參加를 크게 두려워 하는 나머지 皇帝의 勅許를 얻어 우선 徐載弼을 除去하고 다음에는 負祿商에게 皇國協會와는 反動團體를 組織케하여 獨立協會에 反擊을 加하고자 한 것이다.

드디어 獨立協會의 指導者이며 中樞院의 顧問官으로서 民主獨立運動에 앞장섰던 徐載弼博士는 政府과 露·日·美三國의 國際的 策動으로 그의 祖國에서 追放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¹⁾ 그러나 그가 남긴 「독립신문」과 獨立協會의 運營은 會長 尹致昊 以下 李商在 南宮愬 李承晚 梁弘厚 鄭喬등의 同志들에게 引繼되어 더욱 活潑하게 推進되었다.⁽⁵²⁾ 이들은 그 氣勢를

(50) 韓國季年史上 卷三 前揭書 pp. 182-183.

(51) 徐載弼博士自敘傳 pp. 218-219. 韓國季年史上 pp. 187-188. 徐博士가 中樞院顧問官職을 解雇당한다는 所聞이 나돌기는 4月 25일부터이며 同 30일에 協會員들은 崇禮門內의 萬民共同會를 開催하고 決議로서 그의 在留를 政府에 建議한 바 있으나 結局 5月에 逐放되었다.

(52) 大韓季年史上 卷三 前揭書 pp. 183, 207. 尹致昊는 尹雄烈의 庶子로서 遣露使節로 歐美諸國을 視察한 復國한후 부터는 남달리 協會活動에 盡力하였으며 2月 27日 任員改選에서 李完用이 會長에 副會長이되고 3月 11일에는 李完用이 全北觀察使가 되면서 尹致昊가 會長의 任務를 代辦하기 되었고 뒤에 (7月 17日) 政府를 날카롭게 批判하는 會員이 優勢해지자 李完用같은 追勢大臣의 會員들은 모두 黜會되었다.

보아 急進派으로 政治를 革新하고자 政府에 큰 壓力を 加하였기 때문에 政府와 菲연코 압력이 생겼으며 여기서 政府는 負褓商派 中心의 反動暴力團體를 組織하여 無條件 王室과 政府要路를 支持하면서 威脅과 暴力만으로 獨立協會에 挑戰하도록 陰謀을 推進하였다. 마침 參政大臣(總理) 趙秉式이 獨立協會로 부터 물시 규탄당하자 負褓商中心의 皇國中央總商會를 組織한 다음 그 스스로 會長이 되어 獨立協會에 對抗하였으며⁽⁵³⁾ 軍部大臣 閔泳綺등 政府要人도 深刻하게 이를 미워하고 있던 때임으로 이들 政府要人이 背後에서 조종하여 吉泳洙 李基東등 不良輩를 시켜 皇國協會라는 看板아래 前記한 皇國中央總商會를 基盤으로 하는 國內負褓商의 大組織體를 만들었던 것이다.⁽⁵⁴⁾

政府는 이들 皇國協會를 表面에 내세워 威脅 공갈等 暴力으로서 恐怖雰圍氣를 造成하면서 獨立協會의 活動을 妨害하자 獨立協會는 다시금 轟起하여 政府를 규탄 공격하였으며 이로서 兩大協會를 中心한各自의 示威와 上疏戰이 關門밖에서 每日같이 繼續되고 對立衝突이 擴大되어 長安의 民心만 動搖되고 마침내 暗黑社會를 出現하게 되었다. 10月 12日에 宮闈의 門가까히에서 거듭 開會示威하는 獨立協會에 대하여 政府側은 당황하여 獨立協會가 「누차 타일려서 경계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굳이 抗命함은 이 무슨 事態이며 이 무슨 道理냐. 疏頭 尹致昊를 우선 嚴重히 檢책하고 内部에 分부하여 설득 退散케 하라」는 詔書를 發布하기도 했으나⁽⁵⁵⁾ 結局 獨立協會의 公式的 要求로 政府諸大臣과의 사이에 일찌기 歷史上 보지못했던 官民協商이 열리게 된 것이다. 即 10月 15日(陰曆 9月 1日) 獨立協會側을 代表한 洪正厚 南宮橒등 5人는 評議員條規修正에 關한 提案등을 持參하고 平民의 服裝차림세로 入闕하고자 하자 한때 朝服아닌 平服의 出入이 法대로 禁門에서 禁止되기도 했으나 政府는 皇帝에게 上奏하여 特許를 받어 이들平民의 入闕을 許可했으며 이들 代表를 마지한 政府諸大臣은 起立

(53) 韓國季年史上 卷三 p. 234.

(54) 負褓商은 政治的役割을 해왔다. 元來 褙商은 織物, 金銀, 化粧用品등을 褙에 싸서 등 또는 당나귀에 싣고 다니는 行商人으로서 右社에 屬하여 坐商이라고도 했고 負商은 陶器, 家具, 乾魚 荒物등 등짐 장수로서 左社에 屬하여 行商이라稱했다. 兩者사이에 判然한 區別이 있고 그 販賣하는 商品에도 規定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暴君의 徵稅와 盜賊 山間僻地의 行路때문에 集團往來하므로相互扶助의 團結力이 強하여 따라서 종종 政治的으로 利用되어 왔고 朝鮮王朝는 初期부터 이들을 保護하여 一朝有事時에 勤王의 忠實한 後方部隊로 通信 連絡 軍需輸送등에 利用하였다. 例컨대 高宗三年(1866) 佛國艦隊가 來侵하였을 때에도 크게 活躍했으며 뒤에 褙負廳을 設置하여 李載冕으로 하여 금廳務를 總理케하여 八道의 褙負商이 全部 이에 屬하게 되었으나 1885(高宗 22)에는 惠商工局이 되었고 大院君은 이를 商工局으로 또 閔妃는 이를 商理局으로 고쳐 각기 自家勢力扶植에 利用하였다. 光武二年 皇國協會가 이를 利用하여 獨立協會打破에 利用한 後 그를 解散하는 同時に 商務會議所를 設置하였다. 皇國協會는 惡德으로 出世한 李行演, 金玉均의 殺害로서 得名한 洪鍾宇, 水平社出身 吉永洙등을 幹部로 삼고 重臣 趙秉式, 沈相薰, 申箕善, 閔泳綺, 閔丙弼, 韓圭禹등이 支援하는 御用防禦團으로서 그 構成分子는 褙負商 衡平社 및 水平社(白丁을 中心으로 하는 賤民階級이 그 社會의 差別待遇를 撤廢하기 위하여 組織된 政治鬭爭團體)會員其他 無識輩들이었으며 이는 獨立協會의 構成分子가 貞洞俱樂部의 政治人 外國留學生 및 知識階層과 좋은 對照가 되었다.(韓國史辭典, 東亞出版社, 1959, pp. 136-137. 菊池前揭書 pp 515-516).

(55) 韓國季年史上 卷三 前揭書 p. 259. 官報 光武 2年 10月 12日字.

하여 應坐하고 先坐를 數回 請하자 그들의 사양으로 諸大臣이 先坐한 後에 協會側代表가 이에 對坐하였다. 이때 外部大臣 朴齊純이 總代委員中 누가먼저 發言하겠는가하고 물자 南宮櫟은 言辭로 相議하면 彼此間에 혹시 意見衝突이 생길 優慮가 있으니 文書記錄을 가지고 왔다 하니 朴은 매우 좋라고 이를 接受하였다. 그 提案文書에 의하면 第一條. 法律이 定하는 以外의 어색한 名目의 雜稅도 一切 廢止할것, 第二條. 中樞院官制組織을 改正하여 政府와 獨立協會會員中公正하고 正直한 人員을 選定하여 議政事를 審議도록 할 것, 그리고 이 第二條의 細則은 義官半數는 政府로 부터 추첨選任하고 나머지 半數는 獨立協會로 부터 投票로서 選出하되 乙巳皇帝에게 그들의 候補者를 上奏후 勅敘로 任命도록 할것이며 議長은 政府추첨者 중에서 그리고 副議長은 協會側에서 추첨된 會員中에서 選任하되 諸議官의 投票로서 選出할 것 등으로서 議政府를 거쳐 皇帝의 裁可를 얻어 施行하도록 提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洪正厚는 또 前日에 協會側의 請願이 每番 政府에 의하여 그 効果가 遲滯되었으니 今番만은 一定한 期限日字를 約束하자고 하자 朴齊純은 政府則은 不可不多日을 두고 相議한 후에 決定할 것이라고 했고 朴定陽은 一週日期限으로 하자고 答하자 協會側의 安寧洙委員은 五百 年來로 旣民間의 相對論議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였다.⁽⁵⁶⁾

이와같은 政府와 獨立協會사이의 官民協商이 있었으나 政府의 無誠意와 皇國協會의 反撥^{*}로 因하여 政局의 不安이 漸高하고 兩協會의 示威와 규탄이 계속되자 10月 20日에 이르러 政府側은 다시 詔書를 發布하여 「外國의 例를 들어보면 協會라는 것이있고 國會라는 것이 있다고 하며 協會라고 하는 것은 民人の 私設한 바로 그 職은 共同講談하는데 不過하고 國會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公立으로 國民의 利害를 議決하는 곳이라고 한다. 本國에도 民人の 私設會가 있어 開明進步에 一助가 될가 말가 한데 萬一 政令을 評論하고 大官의 任免을 舉論한다고 함은 本來 協會의 規則도 아닌 것이다. 더우기 번번히 開會하여 皇帝에게 密封上奏하여 大闕을 지키고 大官을 脅迫하여 그칠바를 모르는 것은 國會에도 그러한 權限이 없거늘 乍물며 協會에서 이라…… 앞으로는 協會라고 일컫는 者는 此會·彼會를 不問하고 法規를 仁키지 않고 如前히 방자하게 群衆에 附合하여 作團하고 治安을 妨害하는 者는 嚴斷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獨立協會의 氣勢가 이에 수그려지지 아니하자, 政府는 10月 23日에 韓圭禹을 中樞院議長, 獨立協會會長 尹致昊을 中樞院 副議長에 任命하는 同時に 獨立協會로 하여금 中樞院官制를 改正케 하는 등 懷柔策을 썼던 것이다. 即當日 副議長尹致昊는 政府에 呼出되어 政府大臣과 合席한 자리에서 中樞院官制改正에 關한 政府草案을 交付받았고 諸大臣으로부터 中樞院이 實施되면 協會는 없어지는 것인가는 質問을 받고 中樞院組織과 民會의 有無는 何等의 關聯이 없는 것이며 萬一 中樞院이 政令을 公平正直하게 實施한다면 協會는 기뻐

(56) 前揭書 pp. 261-262.

(57) 前揭書 p. 266.

하고 찬양할 뿐이고 오로지 開明進步에만 從事할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서 協會가 政治의 得失을 論하는 것은 不得已한 일이다 라고 解答한 것이다.

다음날 尹致昊는 中樞院官制改正에 關한 새로운 協會側案을 가지고 政府에 들어갔다. 그 改正案은 第一條. 中樞院은 議政府의 諮問에 依하여 建議를 하되 法律勅令案, 議政府를 결쳐 上奏되는 一切의 事項, 中樞院이 臨時로 建議하는 事項 및 人民의 建議를 採用하는 事項등 을 審查議定한다. 第二條. 中樞院은 議長 1人 副議長 1人 議官 50人으로 하되 그 半數는 獨立協會會員으로 投票選舉로서 定한다. 第三條. 議長, 副議長은 勅任官 議官은 奏任官으로 补하되 議官은 共等級이다. 第四條. 議長, 副議長 및 議官의 任期는 12個月로 定한다. 第八條 議政府와 中樞院의 意見이 不合할 時에는 府·院合席協議에서 妥決한 후 施行한다. 第九條. 國務大臣은 議政府委員의 資格으로 中樞院에서 出頭하여 擔任議案의 趣旨를 解明한다는 등이 며 여기서 中樞院은 곧 立憲制限君主體制下에서의 議院內閣制의 國會의 組織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틀림 없었다. 이와같은 獨立協會의 提案에 대하여 各大臣은 大體로 贊意를 表하면서도 皇國協會를 除外하고 獨立協會側에게만 議官半數의 選出權을 줄 수 없다 하여 結末을 내지 못하든 乃에 17席만 獨立協會에 주라는 皇帝의 意가 傳해지기도 했으나 保留되고 만 것이다. ⁽⁵⁸⁾

이러한 가운데 獨立協會가 中心이 되어 官民共同會를 開催하려는 움직임이 익어갔다. 即 官民合作으로 反動的 政府에 對決하고자 바로 光武 2年 10月 29日에 大規模의 所謂 萬民共同會를 錘路 1거리에서 開催한 것이다. 이 集會에는 大韓獨立이라는 깃발밑에 長安의 有識層, 無識層, 獨立協會員등 各界各層의 人士 3,000餘名과 議政府 參政大臣 朴定陽以下 8名의 政府大臣이 參席하였으며 副會長인 李商在의 開會辭에 뒤이어 會長 尹致昊의 至誠이 넘치는 憂國愛族의 大熱辯과 白丁朴成春의 演說 및 李承晚, 南宮橪, 張志淵등의 热烈한 時弊矯正과 官民一般의 自覺促求에 關한 演說에 官民聽衆一般은 크게 感動하여 拍手喝采 滿場一致로서 獨立協會가 提議한 다음의 六個事項을 決議하여 政府에 建議하였다. ⁽⁵⁹⁾

- 一. 外國人에게 依附하지 아니하고 官民이 同心合力하여 皇權을 堅固히 할것.
- 二. 鐵山, 銀道, 石炭, 森林 및 借款, 借兵과 政府와 外國人間의 모든 條約事는 各部大臣과 中樞院 議長의 合議로서 施行할 것.
- 三. 政府財政과 稅務는 度支大臣이 掌管하되 他府部와 私會社는 干涉할 수 없고 豈算과 決算은 반드시 人民에게 公示할 것.
- 四. 이제부턴 重犯者の 處刑은 그 罪狀을 徹底히 說明하여 犯人이 自服한 後에 施行할 것.
- 五. 勅任官은 皇帝階下께 올서 政府에 諮問하여 過半數決議를 얻어 任命할것.

(58) 前揭書 p. 272-273.

(59) 韓國季年史上 卷三 前揭書 pp. 279-281. 李瑄根 韓國獨立運動史 pp. 221. 萬民共同會의 開催日자が 菊江前揭書 p. 517에서 光武 2月 10月 11日로 記錄되어 있으나 이는 誤記임.

六. 本屯 法令과 規程은 잘 遵守하며 施行할것⁽⁶⁰⁾

以上의 決議案은 國體를 尊重하며 國家의 資源과 財政을 公正히 管理하고 法律을 平等이 하여 모든 法規를 遵守하자는 것으로서 이 萬民共同會에 臨席했던 政府大臣諸位 또한 느낀 바 있어 「可」字를 쓴 다음 捤印까지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皇帝께 大會의 光景을 上奏하고 決議된 六個事項을 報告하였던 바 高宗帝는 嘉賞하여 (一) 諫官을 廢止한 後로 言路가 막히어 上下의 勸勉警勵하는 뜻이 없어졌으니 中樞院章程을 잘 作定하여 實施할 것 (二) 各項 規則이 이미 定해진 바 있으니 集會나 新聞에도 없을 수 없다. 集會規則에 對해서는 議政府와 中樞院으로 하여금 時宜를 參酌하여 裁定케 하고 新聞條例는 内部와 農商工部로 하여금 各國의 例에 따斗 裁定施行도록 할 것. (三) 觀察使以下 地方官과 地方隊의 長官等으로 現任이나 前任을 莫論하고 公金을 橫領한 者는 賊律에 의하여 處罰하고 民財를 着服한 者는 글고루 찾아서 本屯에게 돌려준 다음 依法에 處斷할 것. (四) 御使나 觀察員등으로 作弊하는 者가 있을 경우 本屯은 地方人民이 内部나 法部에 告發할수 있도록 許可하는 同時에 查察하여 嚴罰도록 할 것. (五) 商工學校를 設立하여 民業을 勸獎할 것.⁽⁶¹⁾ 等을 詔勅으로서 命하였으며 이는 確實히 代議政治와 集會 및 新聞의 育成, 官紀肅正과 貪官污吏의 根絕, 그리고 民間企業의 奬勵등을 指示한 것으로서 獨立協會가 主導한 萬民共同會의 戰爭의 大成果라 하겠으며, 이에 힘을 얻은 獨立協會는 皇帝即位記念일인 10月 31日의 繼天節을 맞이하여 獨立館에서 國民大眾과 함께 盛大한 祝賀式을 舉行하고 前記 建議六個事項과 皇帝의 詔勅五條를 10萬枚印刷하여 全國에 配布하고 나아가 各學校로 하여금 이를 教材삼아 學徒들에게도 閱覽시키게 하였다.⁽⁶²⁾

以上과 같이 热誠있는 愛國指導者들과 民衆運動이 꾸준히 展開되자 우선 政府는 마지못해 年來의 民族的宿願이었던 中歐院의 新官制를 비로소 頒布하였다. 即 數年來로 獨立協會側에서 要求해 왔고 前記 萬民共同會의 決議를 받았던 11月 2日에 中樞院官制를 改定하였는데 之. 主要內容은 第一條. 中樞院은 다음 事項을 審查議定하는 處所이다. 即 1. 法律, 勅令의 制定 및 廢止또는 改定에 關한 事項. 2. 議政事務에 關한 事項. 3. 勅命으로 因하여 議政府로서 諮詢하는 事項. 4. 議政府로서 臨時建議에 對하여 諮詢하는 事項. 5. 中樞院으로서 臨時建議하는 事項. 6. 人民의 奏議하는 事項等. 第二條. 中樞院에 議長 1人, 副議長 1人, 議官 50人 등을 둔다. 第三條. 議長은 大皇帝께서 聖簡으로 勅授하시고 副議長은 中樞院 公薦으로 勅授하시고 議官은 半數는 政府에서 過去에 國家에 有功者를 合議 奏薦하고 半數는 人民協會中에서 27 歲以上人이 政治, 法律, 學識에 通達한 者로 投票選舉할 것. 第四條. 議長은 勅任一等, 副議長은 勅任二等, 議官은 奏任에 無等級이며, 任期는

(60) 韓國季年史上 卷三 前揭書 p. 285, 「官報」光武 2年 10月 31日號外.

(61) 前揭書 p. 284. 「官報」同年 10月 31日.

(62) 前揭書 pp. 285-286.

各 12 個月임 第 11 條. 中樞院은 各項의 案件에 대하여 議決權이 있되 直行上奏 또는 發令할 수는 없음. 第 12 條. 議政府와 中樞院의 意見이 不合한 경우는 玄府·院合席協議하여妥當히 可決한 후에 施行할 것. 第 13 條. 國務大臣은 議政府委員으로서 擔當事項에 關하여 中樞院에 參席하여 議案의 趣旨를 辨明할 것. 第 16 條. 本官制 第 3 條의 人民選舉는 現今間 獨立協會로 實施할 것等을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半官半民의 民選代議員을 最初로 規定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11月 5日에는 獨立館에서 獨立協會會員들이 參集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初의 投票選定이 施行된 것이다.⁽⁶³⁾

그러나 이같은 報道에 長安의 人民이 故聲을 올리고 協會會員도 이제부터 中興政治가始作되는 것이라고 기뻐한것도 瞬間에 不過했으며 當時의 反動的政府는 모든 約束을 無視 沒脚하고 마침내 쟁트는 民主勢力を 유린하고 만 것이다. 即 11月 4日에는 獨立協會 幹部 李商在, 南宮槐 등 17名이 共和政府를 謀議했다는 中傷謀略으로 逮捕되었으며⁽⁶⁴⁾ 한편 内閣은 頑固한 趙·閻兩大戚族勢力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그러나 모진 彈壓에도 不拘하고 獨立協會會員들은 오히려 興奮하고 激起하여 連日連夜 줄기차게 萬民共同會를 開催하고 政府의 규탄 또는 靜報의 釋放을 要求하였으며 이에 政府側은 당황하여 逮捕 투옥된 17名의 協會幹부를 6日後에 釋放하였다. 여기서 氣勢를 뒤찾은 協會側은 民衆의 支援밑에 政府不信任決議까지 斷行하여 政府에 肉迫하자 政府도 다시 讓步하여 萬民共同會의 代表 20名을 中樞院議官으로 謂薦하겠다는妥協案을 提示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政府側은 裏面으로는 皇國協會를 조정하여 暴力으로 萬民共同會에 對戰케 했기 때문에 兩協會의正面流血衝突은 免치 못했던 것이다. 11月 20日을 前後하여 各地에서 모여든 褐負商 衡平社員등 3·4千名의 暴力團은 長安을 누비면서 獨立協會會員과 市民에게 「태로」와 가진 威脅을 자행하고 萬民共同會의 會衆을 袭격하여 많은 負傷者를 내게 하자 이에 분격한 學生과 青年과 長安의 市民은 萬民共同會側을 支援하며 웰기하여 同族相殘의 市街戰이 展開되었다.

이에 크게 驚心한 高宗皇帝는 事態의 收拾策으로 또다시 内閣을 更迭하여 앞서 萬民共同會의 六個條款議案에 賛成하였던 人物를 要職에 配置하고 負褐商隊를 操縱해온 趙秉式以下五凶과 그들로 頭目 洪鍾宇등 三奸을 流配시키고 負褐商隊의 解散命令를 내리고 獨立協會를 復活시키는 동시에 11月 22日 法律第二號로서 (一) 外國人에게 아부하여 國體를 손상하고 國權을 실추하는 者는 嚴罰한다. (二) 外國政府에 대하여 内密히 本國의 保護를 請하는 者, 本國의 秘密情報 to 外國人에게 누설하는 者, 政府의 認許를 받지 아니하고 外國人에게 借款, 雇兵, 借船등 事를 함부로 하며 또한 그것을 알선한 者, 外國人의 紹介로서 官職을 圖得하려는 者 및 外勢를 거느리고 本國을 威脅策動하며 居中挾雜하는 者등을 嚴罰한다는 内容을 規定한

(63) 前揭書 p. 287-289. (11月 2日附 勅令 36號)

(64) 前揭書 p. 289. 301.

것이다. 이와같은 政府의 一連의 措置는 두말할것도 없이 獨立協會가 그동안 民意를 대변하여 上疏斗 萬民共同會를 통하여 지적하고 규탄해온 建議事項을 받아드린 것이라고 하겠다.⁽⁶⁵⁾

그러나 이러한 措置에 대하여 皇國協會의 暴力輩들은 23日 午後 또다시 萬民共同會側을 計劃的으로誘引 습격하여 多數의 死傷者를 내었다. 事態가 이에 이르자 皇帝는 이 悲劇을 막기 위하여 11月 26日 敦化門 앞에 天幕을 치고 政府大臣과 外國使臣들이 侍座하고 獨立, 皇國兩協會의 要人 約 500名이 連席하고 數많은 聽衆들이 모인 자리에서 親히 事理를 밝혀 同族相殘의 非를 論하며各自 돌아가 業에 安할 것을 권하고 아울러 政府의 不敏을 責하고 그 모든 失敗이 朕이 不德한 所致라고 自責하시니 帝의 一句一語를 깊은 感銘으로 근청하던 官民一同^o 크게 흐느껴 울었으며 끝으로 皇帝는 兩協會의 代表로 부터 각者の 要求를 聽取하고 獨立協會에게는 政府로 하여금 善處토록 하겠다는 勅語를 내리니 期待를 걸고 돌아간 것이며 皇國協會에게는 適當히 諭告하여 退散케 한 것이다.⁽⁶⁶⁾

그리하여 帝는 또한 11月 29日에 獨立協會의 幹部 南宮橓, 李承晚등 10餘名을 中樞院議官에 任命하고 副會長 李商在를 內閣總務局長에 任命하는 등 愛國志士들을 起用하니 大韓帝國의 앞날에 開化獨立의 서광이 비치는 듯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98年 12月 16日 議官 29名이 모인 中樞院會議席上에서 議官 崔廷德의 緊急動議로서 缺員議官 11名의 候補를 中樞院自體에서 選出하여 政府에 內申하도록 滿場一致可決하는 동시에 亡命中인 朴泳孝를 包含시켜 從多數로 候補名單을 可決하여 建議하자 皇帝와 政府를 크게 分개케 하였으며 드디어 獨立協會는 11個條의 罪目的 列舉로서 解散命令을 當하고 그 幹부들은 投獄, 流刑, 亡命등 罷難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⁶⁷⁾

그동안 外勢의 劇烈과 政府 또는 權謀輩들의 탄압에도 不拘하고 저만큼 꾸준히 싸우면서 民衆을 指導啓蒙하고 民意를 暢達하여 政策에 反映시켜 民主政治를 啓發하던 獨立協會가 이제 決定的으로 彈壓當하여 解散되게 되었다. 獨立協會의 解散은 모처럼 民衆속에 뿌리박고 쌍이 뒷¹自主獨立의 近代化運動을 抹殺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大韓帝國은 이때부터 몇년 지나지 않아 日帝에게 그 主權을 박탈 당하고 마는 것이었다.

第三節 乙巳五條約까지의 八年間

前述한 獨立協會의 봉파는 大韓帝國滅亡의 전조가 된것이며 이때부터 政府는 漸次 그 自主獨立性을 잃어가면서 日帝에게 利權과 主權을 侵略當하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清日戰爭

(65) 「大報」光武 2年 11月 24日字 前揭書 p. 345.

(66) 前揭書 pp. 351-354. 菊池 前揭書 pp. 523-526.

(67) 菊池 前揭書 pp. 526-528. 議官崔廷德은 親日的人物로서 이 突然한 朴泳孝추거는 이에 獨立協會內部에 日本勢力이 깊이 침투하여 그 파괴작용을 内部로 부터 일으킨 것으로 추측이 된다. 천시투표에서 朴泳孝는 무려 10點을 얻고 있으며 協會内外에서는 朴泳孝를 内세워 大統領으로 추구하려는 策動도 있었다.

에서 勝利하되 벼락부자가 된 日本은 三國干涉의 威力 앞에 屈服하지 않을 수 없어 前記한 바
列強의 利權分割競爭에도 한때 參與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帝露를 위시한 歐美
列強의 利權逐이 그들 相互間의 分裂을 自招했을 뿐더러 韓國上下의 反感不信과 官民共同
會의 거센 규난을 받게 되자 日帝는 서서히 再進出의 機會를 스스로 찾게 된 것이다. 이러한
好機會를 맞아 하여 日帝側은 對露外交에 새로운 拍車를 加하여 兩國間의 力均衡에 좀더
有利한局面¹·打開하고자 韓國問題에 關한 第三次의 日露協定을 交渉해오던 次에 1898年
(光武二年) 1月 25일에 그 締結調印을 보게 된 것이다.⁽⁶⁸⁾ 무릇 이 第三次 日·露協定의 締
結을 契機로 1898年以後 帝國主義 日本의 對韓進出은 經濟的인 面에서 清日戰爭以前의 優
位를 完全히 回復하게 되며 이와反面에 露帝國은 滿洲經營에 注力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清日戰爭에서 勝利하여 벼락부자가 된 日本은 西歐人所有의 利權을 買收하기 시작하였으
니 그 第一着으로 美國人 J. Morse가 가진 京仁鐵道敷設權과 美國人 Colbran과 Bostwick에
게 許可된 京城電氣事業(서울市內電車, 發電工場 및 水道施設等)을 買收하였고 뒤이어 서울
·新義州間의 鐵道敷設事業 서울·釜山 및 서울·元山間鐵道線 서울·木浦間 그리고, 三浪津·
馬山間 鐵道線 등 鐵道事業을 爲始하여近代化施設을 強占 또는 護得하는 同時に 鎮山·伐
採·蓼圃·溫泉과 漁場을 強奪하고 나아가서는 金塊를 搬出하여 韓國의 金融과 貿易를 支配
하는 등 急進의 으로 이 나라 產業·經濟 및 軍事面의 大動脈을 占有하고 侵略의 발판을 굳쳐
갔던 것이다.

이동안에 韓國政府는 1899年(光武3年) 1月 26일에 皇國協會를 後援해오던 沈相薰이 參
政이 되면서 金商在·李承晚등 愛國者들이 政府에서 물러나거나 彫壓받는가 하면 褚負商隊를
두둔하고 皇國協會側幹部를 重用했으며 3月 16일에는 商務會議所를 商務社로 고쳐 御用暴力
團體로서 全國의 褚負商隊를 統轄케 하였다.⁽⁶⁹⁾ 4月에 醫務官制를 公布하고 廣濟院을 設置
했고 6月 22일에는 元帥府를 宮내에 設置하여 帝 스스로 大元帥가되고 皇太子는 副元帥가되
는 동시에 軍務, 檢查, 記錄, 및 會計등 四局을 두어 각 己軍行政을 分掌케 했으며 또 內大臣을
新設하고 御璽, 國璽, 輔弼 및 顧問의 責務를 擔當케 했다. 同 23일에는 校正所를 設置하
여 法制業務를 管掌케 하고 (7月 2일에 法規校正所로 改稱하고 總裁 및 議定官을 두다) 同
24일에는 商工學校를 設立하여 國民에게 商工業을 教育했고, 8月 17일에는 類似憲法인 大

(68) 日本外交文書 第31卷 第1冊 pp. 182-184. 164號. 第三次 日露協定의 主要內容은

一. 兩國政府는 韓國의 主權과 完全한 獨立을 確認하는 同時に 그 內政에는 直接干涉하지 않
기로 約定함.

二. 兩國政府는 韓國이 勸告 및 協力を 要求할 경우 鍊兵敎官이나 財政顧問官의 任命에 관해
서는 事前에 相互協商하지 않고서는 何等의 措置도 아니하기로 約定함.

三. 露國政府는 韓國에 있어서 日本의 商業工業에 關한 企業이 크게 發達한 事實 및 同國居留
의 日本國 臣民이 多數임을 認定하는 同時に 韓·日兩國間에 있어 商業上及工業上關係의
發達을 妨害하지 않을것 등이었다.

(69) 鄭喬擇 韓國季年史上, 卷五 國史編纂委員會 1957. pp. 12-16.

韓國國制를 頒布하여 近代 專制君主體制를 宣明하기도 하였다.⁽⁷⁰⁾ 特히 同國制는 全文 9條로 되어 大韓帝國이 世界萬國이 公認하는 自主獨立帝國으로서 그 政治는 500年 傳來의 萬歲不變의 專制政治에 따르고 大皇帝는 無限의 君權公法을 形유하는 所謂 自立政治를 志向한다는 内容의 憲法인 것이다. 이와같은 形式上의 規範에도 不拘하고 國運은 亂로 기울어 가기만 했다

光武·年 1月에 萬國郵便聯盟(I.P.U)에 加盟하여 外國과 直接郵便物을 交換하게 된데 뒤이어 3月에는 通信網의 擴充에 따라 通信局을 通信院으로 擴張 改編했으며 同 4月에는 電燈을 鍾路⁷¹ 처음 施設하고 京城電車를 開通하는 同時에 鐵道院을 設置하여 鐵道工事を 推進한 結果 5月 25일에 京釜線을 7月 5일에 京仁線을 각已開通했으며 6月 9일에는 警務廳을 警部⁷² 擴張 改編하여 大臣과 協辦등을 두었으며 (翌年에 다시 舊制로 復함) 同 30일에는 다시 陸軍憲兵司令部를 設置하여 元帥府에 隸屬시켜 軍事·行政·司法등 警察을 管掌케 하고 (上等兵卒 80人으로 二小隊一中隊編成) 7月 20일에는 地方各軍隊의 名稱을 鎮衛隊로 統合하고 (將卒 合3087人) 9月에는 鎮務學校와 陸軍病院을 設置했고 11月 3일에는 侍衛騎兵隊 (將卒 合408人)를 設置하고 또 11月 16일에는 禮式院을 設置하여 宮內의 交涉關係一切의 事務를 統轄토록 하는 동시에 同 19일에는 砲兵(將卒 合 206人) 工兵(將卒 合 175人) 輜重兵(將卒 合 198人) 및 軍樂隊등을 創設하였다.⁽⁷¹⁾

다음해 光武 5年에는 2月에 金本位貨幣制를 實施했으며 8月에 尹容善이 議政이된 守舊政府는 朝鮮과 內憂外患에 휩쓸려 無爲無策이었으며 마침 1902年(光武 6年)에 이르러 滿洲占領과 韓國에의 침식을 企圖하고 있는 帝露의 太平洋進出을 막기위한 共同戰線으로서 英·日同盟이 締結됨을 契機로 極東의 風雲은 緊迫해지고 日本은 韓國에 있어서의 政治上 또는 商業上 特殊利益의 保障을 英國으로 부터 받게 되었으며 政府는 12月 20일에 日本第一銀行券의 流通을 許可하여 朝野의 규탄을 받는가 하면 政府 重臣들 사이에 부질없는 權力暗鬭에 危急한 国事를 들보지도 않았다. 이해에 宮內府에 虏衛隊를 設置하여 挾輦軍·挾輿軍등을 統率케 했다. 다음해 1903年부터 5月에 帝露가 우리 韓滿國境의 要地인 龍岩浦를 強占하고 砲台를 お設하는등 韓國과 滿洲를 둘러싸고 日露間의 緊張은 절정에 도달하였다.⁽⁷²⁾

드디어 1904年(光武 8年) 2月 8일에 日露戰爭은 勃發한 것이다. 이로서 日軍은 長安을 휩쓸게 되니 軍部大臣 尹雄烈등은 이에迎合하였고 日軍의 氣勢와 強要를 막을 道理는 없었다.

(70) 前 著書 pp. 22, 24, 25.

(71) 前 著書 pp. 33, 65, 69, 70, 72, 73, 75, 76.

(72) 前 著書 pp. 89, 93, 97, 98, 108.

當時 親露政府는 (當時 李根命議政, 李趾鎔外務大臣 李容翊內藏院卿 등 親露派 中心) 密使를 旅順港에 보내어 日露開戰의 경우에는 露國軍隊로 韓國을 保護할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내 仁川港에서의 露日兩軍의 衝突이 開戰의 發端이 되었다.

결국 2月 22일에는 攻守同盟을 前提로 한 韓日議定書가 調印되었는 바 그 内容을 檢討해 보면 皇室의 安全과 獨立 및 領土保全을 保證한다는 名分下에서 韓國政府는 日本政府를 確信하여 施設 改善에 關한 그 忠告를 容認하라는 등 主權을 無視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따라서 國民의 非難과 규탄을 받았지만 日帝는 武力を 背景으로 그 議定書에 의하여 廣大한 土地와 通信網, 主要鐵道施設등 權益과 施設을 차례로 軍用으로 占領 또는 接受하여 軍用工事를 進行시켰다. 또한 日本側은 2月 23일에 親露派이며 度支部大臣兼內藏院卿 李容翊을 日本으로 拉去하고 政府는 2月 28일에 商務社를 解散하고 4月 19일에는 地契衙門을 廢止하고 度支部에 畫地局을 設置했다. 5月에 접어들어 日本軍의 北進戰勝의 消息이 들려오자 韓國政府는 韓露間에 締結되었던一切의 條約 또는 協定을 廢棄한다고 宣布하였다. 이에 앞서 日本은 日露戰爭 開始 2個月後인 1904年 5月 그 閣議에서 이미 (一). 適當한 時期에 韓國을 保護國으로 하거나 또는 이것을 日本에 併合할것. (二). 右時期가 到來하기 까지는 政治, 外交, 軍事上에 實權을 掌握하고 經濟上에 있어서는 더욱 日本의 利益의 發展을 圖謀할 것등의 基本政策을 樹立한바 있으며⁽⁷³⁾ 그리한 國策下에서 對韓政策을 推進한 것이다. 우선 日帝는 內政改善。란 口實 아래 露骨的으로 干涉하게 되었으니⁽⁷⁴⁾ 그 結果 나타난 것이 1904年 8月 22日 當時의 外部大臣署理 尹致昊와 日公使 林權助사이에 締結된 「外國人 傭聘協定」으로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 一. 韓國政府는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 하여 韓國政府에 傭聘하고 財務에 關한 事項은 一切 그 意見을 물어 施行할 것.
- 二. 韓國政府는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外國人一名을 外交顧問으로 하여 外部에 傭聘하고 外交에 關한 要務는 一切 그 意見을 물어 施行할 것.
- 三. 韓國政府는 外國과의 條約締結 其他의 重要한 外交案件 即 外國人에 대한 特權讓與와 契約 등事의 處理에 關하여서는 미리 日本政府와 協議할 것.

이 條約의 吉果 財政顧問으로 日本政府 主計局長 目賀田種太郎이 就任하고, 外交顧問으로는 한때 日本外務省嘱託을 지낸 바 있는 親日的美國人 Stevens가 聘用되었으며 또 이와 前後하여 官內部顧問 加藤增雄 軍部顧問 野津鎮武(陸軍中佐) 警務顧問 丸山重俊(警視) 學部參與官幣原坦 등이 聘用되어 韓國政治의 實權은 이들 顧問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10月 14日 韓國財政顧問으로 就任한 目賀田은 財政整理와 通信機關의 統一이라는 名分으로 日本

(73) 堀眞琴 曇日戰爭前後 p. 178.

(74) 韓國季史 前揭書 pp. 117, 118, 120, 133, 134.

(75) 前揭書 pp. 153, 137, 136. 姜志元, 近代朝鮮政治史 pp. 336-337.

同條約의 内容은 第一條, 韓國政府는 그 國내에 所有한 郵便, 電信, 電話事業의 管理를 日本政府에 委託할것, 第二條, 韓國政府의 既設通信事業에 關聯된 土地, 建物, 器具一切 設備는 日本政府保管으로 移屬할것, 第三條, 韓國의 通信機關을 擴張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日本政府는 國有土地와 建物은 無償으로 使用하고 個人土地와 建物은 有償으로 使用할 수 있음 등이며 本條約締結(4月 1日)후 7月 1일에 日本政府는 모든 通信官署를 引繼하고 그 管理權을 行使했다.

政府로 하여금 韓國의 通信機關을 接受케 하는 韓日條約을 1905年(光武 9年) 4月 1日에 締結케 했고⁽⁷⁵⁾ Stevens는 韓國의 모든 外交案件의 審議立案, 外交事務의 監督 및 外交問題에 대하여 皇帝에게 謁見奏上할 權限등을 賦與받음으로서 財政과 外交에 대한 干涉을 한 것이다.

日帝는 이와같은 政府에의 干涉과 併行하여 民間側에게도 손을 뻗혔으니 民聲과 民意를 造作하기 위하여 宋秉畯, 李容九, 尹始炳등 親日政商輩들을 앞세워 一民會, 維新會, 進步會, 一進會등을 組織케 했으며 이들 親日走狗團體로 하여금 韓國이 日本의 保護國이 되기를 自進하는 運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⁷⁶⁾

日帝는 韓國侵略을 위하여 容易周到한 外交的 準備 工作을 劃策했다. 日本은 「포오쓰마쓰」 講和會議上進行하는 中인 1905年 8月 12일에 앞서 1902年에 締結된 英·日同盟條約을 改定하여 「英·日兩國의 獨立과 領土의 保全을 維持할것」에 關한 條項을 刪除하고 同第三條를 「日本國은 韓國에 있어서 政治上, 軍事上, 經濟上의 卓越한 利益을 가지고 있으므로 英國은 日本國이 該利益을 옹호 증진 시키려는데 있어서 正當 또 必要를 認證하는 指導·管理·保護 등의 措置를 韓國에 있어서 取할 權利를 認定함」이라고 改定함으로서 日本은 韓國에 대하여 完全한 推導保護의 權利를 英國으로 부터 承認받았다.⁽⁷⁷⁾ 한편 日本은 이해 7月 29일에 調印한 所謂 태프트·桂秘密覺書(The Taft-Katsura Agreement)를 通하여 美國과의 사이에 比律賓과 韓國에 權益을 相互間의 交換條件처럼 承認하는 密約에 合意를 본것이며⁽⁷⁸⁾ 또 1905年 9月에는 戰勝國의 優位에서 日露間에 締結된 「포오쓰마쓰」條約 第二條에서 「露國政府는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 政治上, 軍事上, 及 經濟上의 卓越한 利益을 有하는 것을 承認하고 將來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 必要로 認定하는 指導, 保護及監督의 措置를 取할때 露國은 이 것을 阻害 또는 干涉하지 不을 것」과 그리고 會議錄에 「日本國이 將來 韓國에 있어서 取할必

(76) 鄭智撰 韓國季年史下卷七 國史編纂委員會 pp. 136, 139-140-153.

처음 宋秉畯은 日本에 多年間 流浪하다가 日本軍 通譯으로 따라나와 日軍閥의 使嗾를 받아 前獨立會會員 尹始炳과 더불어 8月에 一民會를 設立했으며 一民會는 뒤에 維新會 또는 一進會라고 改稱하였다. 한편 前東學黨幹部이었던 親日의 李容九는 東學餘徒를 紛合하여 1898年에 새로 進步會를 組繹해 오던 차 1904年 11月에 宋秉畯의 勸告에 의해서 進步會員을 이끌고 一進會로 들어오니 一進會會長이 되었다. 이들은 削髮作黨하여 附日의 決心을 表示하고 日本軍活動에 關한 代辦的役割을 擔當하면서 朝令에 抗拒하여 全國人心을 驅然케 하였기 때문에 朝鮮民衆의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義兵運動의 標的이 되기도 했으며 榜負商과 雜術輩의 團體인 共進會(12月에 設立)와 衝突을 惹起하기도 했다. 1905年 2月에는 政府施政改善과 行政改革을 위한 對政府提案을 하기도 했으나 1905年 봄부터 日帝의 指令밑에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日政府에 委任하였다. 등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다.

(77) 韓國季年史下 卷上 前揭書 p. 160.

(78) 李致根編 韓國史 現代篇 pp. 913-914. R. J. Bartlett,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1954. p. 414. 그 내용의 要旨는 (1) 日本은 比律賓에 대하여 何等의 侵略의 意圖를 품지 않느. 美國의 支配를 確認할 것. (2) 極東의 平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日·美·英三國은 實質的으로 同盟關係를 確認할 것. (3) 日·露戰爭의 原因이 된 韓國을 日本이 支配할 것을 承認할 것 등이다.

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措置로서 同國의 主權을 侵害하게 될 경우에는 韓國政府와 合意한 위에 이것을 「行할 것을 炙에 聲明함」이라 規定하였으니 이로서 日本은 韓國을 任意로 料理해도 敢히 말하지 者조차 없게 된 것이며 다만 韓國政府의 同意없이 그 主權을 侵害치 못하게牽制當했기 때문에 形式上 保護라는 期間을 두어 李完用內閣같은 賣國政府를 造作하여 所謂合意를 獲得하는 措處를 取한 것이다.

이렇듯 國重이 風前燈火와 같이 危急하게 기울어지자 三世教祖 孫秉熙를 中心한 大多數의 東學敎徒는 朴容九一派가 純朴한 教徒들을 一進會로 휘몰아가는 것을 斷然 排擊하고 民族大義를 守護하. 그자 天道教라는 旗幟아래 陣容을 새로 가다듬어 이에 抵抗한 것이며 京畿道觀察使 崔益鉉은 거듭 上疏를 올려 賣國亂賊을 규탄하였고 志士 羅寅永은 日本政府에 대하여 抗議하기도 했다. 이와는 反面에 日本으로 부터 巨額의 機密費를 받아가지고 暗躍해온 賣國奴의 集團인 - 進會는 1905年 10月에 韓國을 保護國으로 만드려는 聲明書를 發表하였다.⁽⁸⁰⁾

이와같이 一進會로 하여금 前衛的으로 宣傳工作을 시켜 與論의 統一을 고란케 해놓고 얼마 안되어 乙巳(1905年) 11月 9日 日本國樞密院議長 伊藤博文이 特命全權大使로 서울에 来到하였다. 그는 所謂 保護라는 美名아래 우선 外交權부터 剝奪하고 韓國을 統監府밑에 두자는 「韓·日新條約」案을 韓國政府에 傳達하면서 가진 위협과 公갈로 可否를 強要한 것이다. 이때 伊藤이 皇帝에게 早速히 認許하시기를 바라자 皇帝는 「朕의 祖宗以來 이 나라의 規模上國家에 重大事가 있을 때에는 政府大小官吏와 時原任大臣 및 儒生들과 諮詢한 후 決定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國內紳士와 人民의 與論을 들어 參酌하면서 實施하는 遺例가 있으니 朕의 獨斷으로서는 處理할 수 없다」고 하시니 伊藤은 「人民의 橫議는 兵力으로서 鎮壓할 것이니 兩國의 交誼上 위하여 處分하시라」하였으므로 皇帝는 「此條約의 認許는 곧 亡國과 다름이 없다. 朕은 仁稷에 殉할지언정 決코 認許하지 않겠다」고 斷乎히 拒否하시니 伊藤이 4,5時間을 조르다가 結局 目的을 達하지 못하고 退闋하였다.⁽⁸¹⁾ 이러한 皇帝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이날밤 伊藤는 저의 朝鮮軍 司令官 長谷川大將, 憲兵司令官 明石少將 등 數 10 名을 이끌고 다시 入闈하여 閣議에서 가진 위협으로 閣僚들을 個別의으로 強要한 끝에 三大臣(韓圭高參政, 閔泳綺度支, 李夏榮法部)은 끝내 拒否했으나 五大臣(李完用學部, 李根澤軍部, 李址鎞內部 朴齊純外部, 權重顯農商工部)은 모다 責任을 皇帝에게 轉嫁하면서 贊意를 表示하고 말았으며 뒤이어 伊藤은 皇帝의 勅裁도 強要함으로서 乙巳保護條約은 不法的으로 強制當한 것임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²⁾

(79) 李道根著『韓國史 現代篇』pp. 918-919. 有賀長雄著, 保護國論, 明治 39年 9月, 早大出版部, pp. 216-217.

(80) 高權三, 朝鮮政治史, pp. 131-134.

(81) 韓國季史下 卷七 前揭書. pp. 169-170.

(82) 前揭書. pp. 171-176.

日本政府와 韓國政府는 兩帝國을 結合하는 利害 共通의 主義를 공고히 하고자 韓國富強의 實을 認定할 수 있는 때에 이르기까지 此目的을 위하여 左의 條款을 約定함.

第一條. 日本政府는 在東京外務省을 經由하여 今後 韓國의 外交에 대하는 關係及事務를 監理, 指揮할 것이요. 日本國의 外交代表者及領事는 外國에 있어서의 韓國의 臣民及 利益을 保護할 것임.

第二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과의 間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遂하는 任務에 當하고, 韓國政府는 今後 日本政府의 仲介를 經由치 않고서 國際的 性質을 가진 何等의 條約이나 約束을 하지 않기로 相約함.

第三條. 日本國政府는 그 代表者로 하여금 韓國皇帝階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하되 統監은 오로지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위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皇帝階下에게 內謁하는 權利를 有함. 日本國政府는 또한 韓國의 各開港場及其他 日本國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理事官을 設置하는 權利를 有하되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아래 從來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하던 一切의 職權을 執行하고 아울러 本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로하는 一切 事務를 掌理할 것임.

第四條. 日本國과 韓國과의 間에 現在하는 條約及約束은 本協約에 抵觸하지 않는限 모두다 그 効力を 繼續하는 것임.

第五條. 日本國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하기를 保證함.

以上는 두말할나위도 없이 完全히 強制當한 條約으로서 國際法上으로도 無效라 하겠기에 高宗皇帝도 그 無效임을 宣言했고 이 內容이 天下에 發表되자 舉國의인 죽음에 抗爭이 즐기차게 뿐어진 것이다.

第 10 章 肯定的 反應論의 擡頭 ~開化論으로의 發展~

第一節 東道西器論에 의한 自強意識

修好條約 締結以後 日本勢力의 侵透와 洋夷邪學에 대한 警戒意識 속에서 儒生들의 衛正斥邪思想이 沸騰하여 갔으며 그것은 곧 斥倭洋이란 名分밑에서當時 政權에 의하여 推進되던 一聯의 開化政策에 直接의인 反對輿論으로 굳어져갔다. 그러나 이와같은 否定의인 反應속에서도 間接의인 世界情勢에 대한 見識의 擴大, 清國의 中間斜旋 등으로 인한 開化政策의 試圖등으로⁽¹⁾ 一脈의 開放의인 革新政治가 또한 繼續되어 갔다. 그것은 1882年 5月 韓美修好條約²⁾ 締結에 의하여相當한 進前을 보이게되며 여기서 朝鮮朝를 從來의 東洋의인 事大外交의 外交形式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列國關係에 實質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外勢의 侵透와 傳統秩序의 動搖에 의한 危機意識이 짚어가는一方 反面으로는 西洋技術의 摄取·利用이라는 開放意識도 擴大되어 갔다. 그리고 이와같은 開放意識은 역시

(1) E省錄, 高宗 17年 7月 16日 條「清國密咨內容」參照.

西洋文物을 崇尚하여 여기에 빼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外部的要因에 의하여 주어지는 意識의不安 속에서 이이 對應自存하려는 自立的 民族意識의 發露로서의 危機的 產物이었던 것이다.

즉 그것은 衛正斥邪論者들의 部分的인 採西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高宗 18 年 (881 年) 6 月 前掌令 郭基洛이 올린 上疏에서는 요즈음 各道儒生들이 衛正斥邪라는 名目으로 輿論이 沸騰하여 마치 一國이 西學에 빠지고 洋服을 입게 되리라고 하나 그것은 어데 가지나 그렇지 않으며, 日本과의 修交와 斥洋과는 스스로 別個의 問題로서 修交하면서로 斥洋政策은 堅持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見解는 士林들에게서는 비교적 처음 登場된 倭羊分離說로써 當時 開化政策 (匪洋伊修論)에 대한 積極的인 肯定이었던 것이다.

즉 그는

「…우리 나라가 日本을 容接하는 것은 그들을 단속하려는 計策에서 나온 것이요. 日本이 西洋과 交好하고 洋學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禁할 바가 못된다. 그리고 우리가 交好하는 바는 다만 日本뿐이니 어찌 西洋과 더불어 通하는 것이 되겠는가?…」⁽²⁾라고 하여 所謂 「崇正學隸異端」의 原則에서 邪教를排斥하되 日本과의 和好는 推進할 것을 主張하였다. 따라서 그는 黃遵憲의 「朝鮮策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關係되는 繫要한 敵情에 대한 策略이기 때문에 그 取捨選擇은 政府가 自主의 으로 對處할 問題라 主張하면서 日本과의 修交는 古來의 修好關係와 天下通商의 現情勢에 비추어 그 要請을 拒否할 수 없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修好通商을 推進하는 우리의 立場을 밝혀

「…不友하면서 勉從하기보다는 차라리 順就하여 그들과 團結하는 것이 낫다. 다만 得宜한 措處를 取하여 우리의 自強을 폐하는 길 뿐이다. 따라서 그 器械의 技藝나 農藥의 書籍가운데 진실로 우리에게 利益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擇하여 行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해서 그 良法까지 이울려 물리쳐서는 안된다.」고 提言하였다.

그것은 곧 開化自強에 대한 提言으로서 全面의인 倭·洋排斥이나 西學排斥에서 벗어나 西洋人과 西洋法 (技法)을 分離시켜 機械와 產業技術로 부터 西歐를 받어드리려는 部分의인 採西思想이 있다. 그러한 部分의인 採西는 修好自強의 肯定의인 手段으로 認定되고 있었으며 이와같은 意識는 우리의 秩序를 中心으로 한 自強과 그러한 自強을 위한 西歐技術의 採用이라는 말하자면 東道西器의 ⁽³⁾ 開化思想의 發論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採西思想은 1882 年 韓美修好通商條約을 통하여 列國通商이 體制化되어 갑에 따라 점차 儒生들 사이에 擴大되어 갔다. 즉 高宗 18 年 9 月 直講 朴淇鍾은 그의 陳疏

(2) 日省錄, 高宗 18 年 6 月 8 日條(10~12).

(3) 「東道西器」란 用語는 比較的 최근에야 使用되기 시작한 概念이다. 그 概念에 대하여는 韓治勛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 II, 韓國史研究會, 1968, pp. 130~134 參照.

에서

「…傳敎에 外國과 聯好한다는 것이 있다. 外國의 教는 邪로서 마땅이 음란한 音樂이나 美色과 같이 이를 멀리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器는 즉 利」로운 것으로 진실로 利用厚生이 될 것인 즉 農桑・醫藥・甲兵・舟車등은 어찌 꺼려서 施行치 않을 수 있겠는가?」⁽⁴⁾고 主張하여 그 教는 멀리하되 그 器(技)는 利用해야함을 提言하였다. 여기서 西洋의 技術을 「洋砲・洋船」으로 排擊했던 觀念에서 부터 그것을「利用厚生」과 關聯시키는 肯定的인 意識의 擴大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1860 年代 洋物은 「淫奢奇玩」(음탕하고 사치하며 기이한 장난감)같다고 하여排斥하던 洋物禁斷論이나 (李恒老, 奇正鎮, 金宇然)⁽⁵⁾ 1880 年 軍器學造를 反對하여 「戰勝攻取의 術은 用兵에 있을 뿐, 技藝에 있지않다」고 主張했던 技藝否定論⁽⁶⁾에 비한다면 실로 西歐認識에 대한 획기적 發展이었다. 사실 高宗 15 年 5 月 慶尙左道暗行御史 李萬植의 書啓別單에서도 我國產物인 米穀・牛隻・皮革 鐵鼎등은 利用厚生之資인데 비하여 日產物인 「技巧眩眼」物은 無益한 것이라하여 그 交易을 反對하였다.⁽⁷⁾ 여기에 비하여, 본다면當時의 西器에 대한 利用厚生說은 西洋의 技術과 物產을 肯定하고 들어가는 採西의 基礎의 段階이었다 하겠다.

그리고 이와같은 採西를 통한 西歐에 대한 肯定的 認識은 점차 擴大되어 「西國의 器械는 耕織이나 兵備에 有利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것이 民國에 利益이 될만하다」⁽⁸⁾는 上疏가 연달아 나타났다.

여기에는 朝鮮이 獨立自存을 維持하기 위하여는 天下各國과 講好通商이 不可避하다는 積極的인 開放通商論도 並行하고 있었으며 그와같은 通商論은 貿易의 振興 外貨의 獲得을 통하여 西洋產物 (工產品)을 직접 生產하자는 生產振興論으로 發展하고 있었다.

즉 任身 趙曠朝는 그의 上疏文에서

「오늘날 東西南北으로 講好한 가운데 각국의 貨幣를 모두 通用케한다면 彼此가 같이 便하게된다. 즉 常平錢이 流出되면 他國錢貨가 流入되어 貨幣가 극히 풍성해질 것이니 그렇게 될 때 火車・火船・械器・電線등을 製造할 수 있을 것이다」⁽⁹⁾라고 主張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積極的 貿易・通商論에 대하여 外國人の 交貨謀利를 경계하여 거기에 對備하기 위한 防禦策의 問題도 論議되고 있었다. 즉 그것은 積極的 採西로 前進하기 위한 自立意識強화의 一形態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러나 상황에서 採西의 方法은 보다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었다. 高宗 19 年 9 月 前主事

(4) 『日省錄』高宗 19 年 9 月 5 日條.

(5) 『重菴集』卷三十八, 雜著「禦洋論」參照.

(6) 『日省錄』高宗 17 年 12 月 17 日 條 前正言 許元栻 上疏.

(7) 『日省錄』高宗 15 年 5 月 26 日 條 慶尙左道 暗行御史 李壽植 書啓別單 參照.

(8) 『日省錄』高宗 19 年 9 月 5 日條(36,37) 鴻山幼學 趙聲教上疏.

(9) 『日省錄』高宗 19 年 9 月 14 日(66) 蔚山幼學 李教權 上疏.

柳宗秀의 10卷 時事疏 가운데에는 「오늘날 各國의 兵器가 날로 奇巧하여 져서 硕上에도 鏡을 加設하여 彈丸을 發하여 하나도 的中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지금 世界各國이 모두 輪船을 지녀 그 航強에 힘쓰고 있으나 유독히 우리나라만이 經用이 넓지 못하여 그것을 갑자기 製造하지 못한다」고 指摘한 다음, 그것은 富民들에게서 出資하여 만들게하고 商民들에게 納款貰用케 한다면 船主는 還本하고 商民은 獲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緩急時에는 海洋防禦를 擔當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¹⁰⁾ 즉 그것은 通商과 軍備兩面에서 汽船建造를 主張한 것으로서 探西意識의 幅에 있어서의 多樣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또一步 더 나아가서 海外 技術習得을 위한 大衆教育의 問題로 擴大되어 갔는바. 廣州儒生趙汝의 上疏에서 잘 表現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머물른 各國의 軍容의 整然함과 兵器의 利는 실로 이를 본받을 만하니 마땅히 그 規準을 본받아 軍士를 教鍊해야 한다. 더 나아가 工藝의 巧妙함과 商販의 繁盛함에 대하니는 그 精隨를 배우고 그 妙理를 取한다면, 즉 모든 國民이 그 才智를 習得하여 모든 技術에 종사케 한다면 구태여 稀世의 才藝를 求할 필요가 없다.」⁽¹¹⁾ 이것은 探西의 基盤을 汎國民的 方向으로 一般화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르러 西歐技術의 習得은 邪敎의 전파라는 斥邪的側面으로부터 分離되고 있었다.

여기서 흔히 1880年代를 中心으로 하는 韓民族의 開化問題가 提起된다.⁽¹²⁾ 즉 高宗 17年(1880年) 4月에는 軍器貿取와 軍器學習問題가 公式的인 大臣會議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論議되었으며,⁽¹³⁾ 그 결과 國王 高宗은 學造(技術習得)와 備禦(國防)를 위한 政策을 推進할 것을 이미 表明하고 있었다.⁽¹⁴⁾ 여기에 並行하여當時의 國際情勢를 論하여 朝鮮의 나갈 바 外交政策을 劍誘한 소위 黃遵憲「朝鮮策略」을 朝廷에서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여⁽¹⁵⁾ 情勢變遷에 따른 政策의 새로운 轉換을 試圖하려했던 것이다.

그것은 모¹⁴ 中國과의 關聯下에서 이루어진 間接的인 開化에의 試圖이긴 하였어도 이와같은 一聯의 意識의 努力은 同年 年末 드디어 開化推進을 위한 政府機構改編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곧前述한 1880年의 統理機務衙門의 設置로서 거기에 나타난 十二司中 비록 事大·交隣과 같은 編制形式으로 보아 從前의 事大交隣의 外交태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하드라도⁽¹⁶⁾ 그것은 결국 一聯의 改革이란 政策의 意圖에서 出發하였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10) 日省錄 高宗 19年 9月 6日條(40~42).

(11) 日省錄 高宗 19年 9月 20日 條(12).

(12) 千寬宇 “韓國近代化의 諸問題” 震檀學報 二十三號, 1962, p. 211.

(13) 日省錄 高宗 17年 4月 30日條(65~66) 司諫院 以諸大臣收議啓.

(14) 日省錄 高宗 17年 4月 30日條(66~67).

「…教之諸大臣收議 皆有難慎之論… 然我朝 此等諸啓 非一非再則 祇論事之繁漫而已 旣行與否 有不可 順也 况此事之出 於學造備禦之策者乎 從當更有處分矣」

(15) 日省錄 高宗 17年 8月 28日條(53), 修信使 金弘集召見.

(16) 全海宗 “統理機務衙門 設置에 關하여” 歷史學報 十七·十八 合輯 參照.

그리고 그와같은 改革에의 試圖는 統理機務衙門設置에서 구체적으로는 中國에 대한 軍器學造의 施行과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그 形式이 비록 從前의 事大·交隣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實踐한 政策은 우선 武備와 軍器를 위한 技術習得과 같은 改革的 強兵政策이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中國과의 關係에서 試圖된 強兵政策 이외에도 日本을 통한 採西政策의 擴大가 함께 추구되고 있었다. 즉 高宗 18 年 (1881 年) 1月에는 새로운 文物制度를 상세히 調查해보기 위하여 紳士遊覽團을 日本에 派遣하였으며 그 결과 西洋文物에 대한 상당한 知識이 蒐集入手되었다.當時의 海外見聞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日本은 西洋의 制度를 받아들여 立法·司法·行政 등 三權分立制度를 確立하고 있으며 또 憲法를 만들어 人民의 自由를 憲法에 保障하고 있다는 점과,⁽¹⁷⁾ 또 그들의 富國強兵策으로 보아 그들의 富強은 當然한 것이며 그것은 오직 그들의 軍民合心의 結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 기기에는 歐美諸國의 政治制度에 대한 言及도 있었으니 즉 佛國은 君民共治, 魯國(露西牙)은 立君獨裁, 英國은 貴族政治, 그리고 亞國(美國)은 共和政治라고 說明되고 있었다.⁽¹⁸⁾

이와같이 日本을 통한 西歐知識의 擴大는 주로 그들이 成就한 富國強兵에 대하여 肯定的인 反應과 보임과 함께, 그와같은 새로운 文物制度에 대처하기 위한 政策立案이 적어도 政府當路者間에서는 거의 不可避하게 되었었다. 이로서 中國에 대한 軍器學造 政策의 決定에 뒤이어 日本을 통한 軍機技術習得에 대하여도 推進할 政策의對備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高宗 18 年 ((1881 年) 2月에는 軍機에 대한 見聞을 넓히고 그 技術習得을 위한 豫備의 交渉을 1월이기 위하여 統理機務衙門에서는 參劃官으로 李元會와, 參謀官으로 李東仁을 差下하여 日本으로 出發시켰다.⁽¹⁹⁾當時 비록 銃砲·船舶등에 대한 技術習得을 勸誘해온 日本公使로 부터의 交涉도 있었지만⁽²⁰⁾ 그보다도 더 重要했던 것은 西歐見聞의 擴大에 따라 나타난 富國強兵에 대한 政策의意欲의 成長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1880 年代의 開化에의 契機는 흔히 少數의 官人엘리트에 의한 開化政策의 推進이라는 극히 部分的인 國家的 側面에서의 開化로 限定的으로 보는것이 과거의 一般的見解이었다. 그래서 開化政策에 대한 反抗運動으로서 辛巳衛正斥邪思想과 對照的으로 比較하여 온 것도 사실이었다.

(17) 丙政院改修日記, 光緒 7 年 9 月 1 日「聞見事件」第一冊

(18) 上揭「聞見事件」第一冊(閔種默)

(19) 丙省錄·高宗 18 年 2 月 10 日條(15).

(20) 丙省錄·高宗 18 年 2 月 10 日條(15).

「光機啓言 以軍機學造事 派使中國 已有成命矣 謹當磨鍊以入而 日本公使 亦以銃砲船舶等事 至 有文字於廟堂 非但難恕其厚意 他國軍械亦或有廣見聞之道…」

그러나 그 깊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斥邪思想의 基盤 위에서도 오히려 나타나기 시작했던 探西意識의 臉頭와 또 道(體)와 器(用)가 區別되는 단계에서 나타난 排他是單純한 斥洋만이 아니고 且 하여 探西로 發展하기 위한前提的 狀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開化政策은 開化에 대한 國民의 意識成長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開化意識의 發展的 過程을 더욱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여기서 그와 같은 一聯의 開化政策에 反對했던 1880年代의 斥邪意識에 대한 考察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排也的 斥邪와 自主的 開化와의 關聯性도 아울러 考察할 必要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1876年의 修好條約이 元山과 仁川開港을 통하여 實現되어 가던 1879年代 일기시작했던 소위 兩港開港反對를 중심으로 한 反對上疏들은 모두 開港體制가 가져올 經濟的 危機를 警戒한 斥和意識과 現實的 進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華夷意識에 基盤한 宗教의 斥邪보다는 經濟的 危機와 侵略的 威脅에⁽²¹⁾ 대응하기 위한 보다 現實的인 民族自存意識의 發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 開港反對 上疏들은 모두 開港을 朝鮮朝의 產業을 阻害시키는 侵略行爲로 覺明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장으로서 自國產業保護와 開港反對를 並行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蓄積은 國家의 大命」이라고 하여 財政을 國家의 重要한 活力素로 認定한 다음 倭國의 物貨는 「奇奇怪怪한 無用之物」이기 때문에 그들의 強要대로 開港通商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滅貨」를 招來할 一大 危機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通商開化가 아니라 工產品의 汎 豈으로 인한 「奢侈의 助長」만을 意味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開港反對論은 「우리의 物產은 뚜렷이든 產生되지 않는 것이 없다」⁽²²⁾는 自主的 經濟觀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立易은 元山開港을 不得已 許諾하게 되어야 할 段階에서 더욱 심각하게 表現되고 있었다.

즉 「소위 朝國使臣이라 하면서 開港을 強索하고 있는바, 저들의 開港을 要求하는 元山은 北道의 咽喉로서 만약 저들이 와서 住接할 경우 水陸의 길이 막히고 南北의 產物이 阻絶될 것이니 北道의 民生은 장차 무엇을 賚하여 살것인가?」⁽²³⁾라는 上疏는當時 強制開港에 따른 危機意識을 보다 잘 說明해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經濟的 危機意識과 開港反對論은當時의 開港體制와 連結되고 있던 高級 官人 엘리프트들 가운데서도 部分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仁川開港은 「島夷의 跳梁이요 講信(修好條約)의 窪穠」로서 그것을 許諾한다는 것은 「無窮한 覆」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主張한 領府

(21) 이점에 대하여는 日人學者들도 겹차 同意하고 있다.

旗田魏 “近代における 朝鮮人の 日本觀——衛正斥邪を 中心にして”『思想』520號(1967, 10)

(22) 日省錄 高宗 16月 1日 24日條(66) 執義 權鍾祿 上疏.

(23) 日省錄 高宗 16年 5月 15日條(33) 副護軍 金斗淵 上疏.

事 李裕元이나,⁽²⁴⁾ 仁川開港은 「결코 許諾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擧國의 同情이니 그 누가 그 حق을 许하여 「將來의 無窮한 夢」를 불러올 것인가? 라고 說破한 判府事 姜澐⁽²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高宗 16 年頃에 나타났던 開港反對論은 盲目的 斥洋이나 華夷的 斥邪가 아니고 經濟的 武力的 威脅下에서 自己를 保存하기 위한 民族的 自存意識이었으며 그렇기에 그것은 後日 採西를 基盤으로한 積極的 自強意識과 그대로 連結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妥當할 것이다.

한편 高宗 17 年 소위 「朝鮮策略」을 契機로 불붙기 시작한 衛正斥邪意識의 再燃도 單純한 華夷意識이나 斥洋意識의 反動的 強化단은 아니었다.

즉 그의 「崇儒重道」나 耶蘇教排斥과 같은 文化的 信念體系를 中心으로 하였기 때문에 흔히 衛正斥邪라는 意識形態로만 說明되어 왔다. 그러나 소위 辛巳衛正斥邪를 중심으로한 開化反對論은 단순한 斥邪思想의 思辨的 展開가 아니고當時의 開化政策의 要求는 具體的 現實을 中心으로한 政治過程의 重要한 投入機能으로 作用하였다.

그리고 그와같은 投入機能은 주로當時 官人 엘리트에 의하여 推進되던 改革政策에 대한 批判的 機能으로서 그것은 外勢의 介入이나 採西基盤의 未備로 다분히 動搖되던當時의 開化過程을 自主意識의 側面에서 捕完해주었다는 肯定의 性格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辛巳衛正斥邪는 종전의 華夷的 斥邪에 대한 理論的 執着이 아니고 開化나 採西를前提의 現狀으로한 機能的 現實論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1880 年代 開化過程에 있었던 意識의 葛藤은 開化와 斥邪의 正面的對立이 아니고 開化政策을 中心으로 벌어진 政治過程의 分化現象이었고 이와같은 政治單位의 機能的 分化는 오히려 後日의 開化過程에 더욱 깊은 意味를 賦與할 수 있었다는 主張이 可能하여 진다.

즉 開化推進勢力으로서의 官人集團과 이것을 批判하는 土林集團의 分化는 곧 統治過程과 政治過程의 機能的 分化로서 그것은 후일 開化過程은 주로 統治過程을 통한 國家的 側面에서, 그리고 民族自主性의 體系化過程은 주로 政治process을 통한 民族社會의 側面에서(nationalism) 각각 擔當케 하였다.⁽²⁶⁾

이와같은 政治process의 投入機能이란 肯定的 立場에서當時의 斥邪思想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當時의 開化政策이 갖은 現實的 効用性의 問題와 偏狹하지만 自己保存을 위す 自主自存의 問題와 結付되고 있었다.

「仁川는 開港하여 저들이 와서 占據하게될 때 저들은 市場을 獨占하여 米·布·魚·鹽을

(24) 日錄 高宗 16 年 6 月 17 日條(37).

(25) 日錄 高宗 16 年 6 月 19 日條.

(26) 1955 年 乙巳條約 以後는 소위 國家的 側面에서의 主權의 衰失로서 여기서 나타난 民族運動은 (義兵運動) 民族的 側面과 國家的 側面을合一하고 있었던 것이다.

높은 값으로 交易해갈 때,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利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함께 그들에게 물려가;」 된다.]⁽²⁷⁾

「華盛頓이 歐羅巴의 慢政에서 벗어나 美洲에 開國하여 仁義로서 政治를 하여 왔은즉, 비록 먼 나라에 急迫한 일이 있다해도 그 閉戶主義때문에 軍隊를 함부로 動員하여 派遣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비록 救援해주고자 한대도 通報來往하는데의 莫大한 財費와 時間의 遲延으로 이미 賦敗는 결정될 것이니 어느 여가에 여기에 미치겠는가? …하물며 俄羅斯와 우리 와의 關係는 自古로 원한이 없고 또 近日에도 無難하니 그들이 어찌 來侵하겠는가? 만약 名分없이 저들이 侵攻한다 해도 그것은 名分없는 出兵인즉 成功할 수 없음은 當然한 것이며 또 우리나라에 〔생을 각오하는 民衆들이 있어 저들의 武器와 利兵에 制止打擊을 가할 수 있으니 어찌 그를 두려워할 것인가?〕(前揭 上疏文의 聯美拒俄策 反對).

「仁川開港는 결단코 許諾할 수 없다. 300年間 한번도 開港에 대한 말이 없었는 바, 우리가 일찌기 有木・菽(콩) 粟(必需品)을 저들의 交易을 기달려 살아온 바 없다」⁽²⁸⁾

「日本은 우리가 단속하는 바로서 關隘險夷와 水陸要衝을 이미 占據하고 있어 저들이 朝鮮의 無備를 보고 猪突을 慢行하게되면 이를 制止할 길이 없다. 또한 美國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공연히 우리가 그들을 끌어들일 경우 만약 저들이 우리의 虛를 엿보고 弱點을 淘視하여 어려운 請을 強要하거나 무거운 經費를 떠맡긴다면 무엇으로 이에 應할 것인가? 또 俄羅斯는 豆滿一帶에 接界되어있어 日本이나 美國의 例에 따라 請地來居, 請貨交權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고 그밖의 여러나라로 請地請和하여 온다면 장차 한가닥 우리의 青邱는 可容할 뼍이 없어지게 된다.」⁽²⁹⁾

「倭와의 利好는 舊制 復古로서 今日의 創行이 아니라는 主張은 不當하다. 古來의 和倭는 東萊一隅에 〔나지 않아倭가 우리의 制約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和倭는 마음대로倭가 要衝에 寄據, 畿沿에 寄泊하여 海岸侵犯을 막을 수 없고 裁判權도 行使할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倭에게 制約을 받는 것이다.」⁽³⁰⁾

「倉庫가 空虛하고 甲兵이 不利한 즉 施行할 計策도 없고 實行할 劢力도 없다. 그러므로 機衙(機務衙門)를 創設하여 使行을 빤번케한 그 뜻은 이로서 隣國과 結好하여 外患을 防禦하고 有無를 通商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잘하면 富國張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寇賊을 불러 禍를 끌어드리기 쉽다.」⁽³¹⁾

이상의 斥邪疏의 内容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當時의 斥邪意識은 民族의 自存이란 現實

(27) 日省錄 高宗 17年 12月 17日條(38~39) 前正言 許元栻의 仁川開港反對理由.

(28) 日省錄 高宗 17年 12月 28日條(63) 掌令 李駿善의 仁川開港反對理由.

(29) 日省錄 高宗 18年 2月 26日條(40~43) 嶺南 萬人疏의 策略理論 反對.

(30) 日省錄 高宗 18年 3月 22日條(44) 武科及第 洪時中 對倭制限貿易主張理由.

(31) 承政院 日記 高宗 18年 3月 22日條(42) 出身 黃載願의 論時事疏

問題를 基盤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1880 年代의 斥邪意識은 文化的 價值定向에서 보다는 政治的 이데오로기 侧面에서 成熟되고 있었다 하겠으며 그와 같은 政治的 이데오로기로서의 斥邪意識는 開化와 根本의 으로 對置되는 概念은 아니었다. 즉 1880 年代 西歐的 秩序의 制度化過程에서 朝鮮朝는 社會의 主體性과 政治의 正統性의 動搖가 不可避하였다. 이와 같은 外勢라는 外的 壓力 속에서 當時 政治意識을 培養시켰던 中心課題가 民族的 自存이었다고 할 때, 斥邪라는 排他的 意識이나 開化라는 採西的 意識은 모두 民族的 自存이란 同一한 歷史任務를 志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斥邪는 開化의 意味와 調和될 수 있는 根據가 發見될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斥邪와 開化의 連結을 具現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소위 東道西器와 같은 部分的인 採西意識의 發達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880 年代의 官人엘리트를 中心으로 나타난 一聯의 開化政策은 單純한 統治過程의 政策으로서 만이 아니고 政治過程과 在野勢力까지도 包含하는 包括的인 開化意識의 形成을 促進했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部分的 採西意識은 西歐的 技藝에 대한 實際的 承認에서 부터 出發하고 있었다.

즉 高宗 19 年 9 月 禮曹佐郎 李斗永은 그의 上疏에서

「兵士가 農業에 의지하는 制度는 漢代에서 나왔는 바, 이제 泰西各國이 이런 制度를 利用하여 民이 모두 鍊銳하고 兵은 더욱 強壯한즉 그들의 法이 古昔의 그것보다 더 나은 바 있다.」⁽³²⁾ 고 主張하여 西法의 優秀性을 認定하고 있었다.

또한 刑曹佐郎 康鴻學도 高宗 19 年 9 月에 올린 上疏에서

「우리나라가 機務衙門을 設立한 것은 中國의 總理事務를 본받은 것인 바, 泰西諸國의 公紳, 日本의 外務, 俄·美的 公會等은 모두 各國의 事機를 總察하고 商埠의 要務를 處理하기 위한 것으로서 萬國通行의 規則이 되고 있다. 그러니 總理衙門의 이름을 빨리 復設하라. …」⁽³³⁾ 고 主張하며 政治制度를 萬國通行의 法規에 따라 改革設立할 것을 提議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西歐的 技法의 優秀性을 인정하는대서부터 마련된 部分的인 採西意識은 점차 發展하여 西歐秩序에 參與競爭하기 위한 積極的인 參西意識으로 擴大되어갔다. 그것은 當時의 世界大勢에 대한 觀察과 萬國公法의 承認을前提로 하는 것인바, 當時의 世界史潮流의 主役이 西歐勢力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西歐的 秩序에 參與하기 위한 積極的 開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高宗 19 年 9 月 14 日 蔚山幼學 李敬權이 올린 上疏에서는

(32) 日錄 高宗 19 年 9 月 3 日條(10~14).

(33) 日錄 高宗 19 年 9 月 5 日條(25).

「오늘날 乃下大勢는 萬國이 公法을 共立하고 있으니 이미 天道周星이 그 氣數를 一變한 것이다. 어찌하여 흘로 우리 東方만이 自守하여 各國의 怨望을 득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參與競爭하기 위하여) 不可不豫備하여 防禦策을 마련해야 한다」⁽³⁴⁾고 主張하여 積極的參西를 위한 自主的努力을 力說하고 있었다.

前司果 金魯昇도 高宗 19年 9月 14日字 그의 上疏에서

「經이란 乃은 常이요 權이란 것은 變이다.(우리는) 古常에 만 젖고 變數는 살피지 못하여 從權의 理에 之 어두웠다. 交隣修好는 百國의 常이요, 오늘의 大勢로보아 天下가 同一하다. 交隣과 足兵은 반드시 財用에 달렸으니 財用을 위한 時措의 變과 窮通의 理를 강구하라」⁽³⁵⁾고 說破하여 天下大勢에 呼應並進하기 위한 變通(開化)을 呼訴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積極的 交隣開化의 潮流에는 春秋學의 義理나 內修政教를 강조하는 傳統的意識의 強化 之 部分의으로는 並行하고 있었다.

즉 高宗 19年 9月 15日 副護軍 金競鉉의 上疏는

「義理를 弗하여 隣好를 講究하는 것은 春秋의 義로 보아 昭明한 것이니 안으로 政教를 닦고 밖으로 和好를 맺는 것이 可할 듯하다.」⁽³⁶⁾고 主張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1880年代 朝廷의 開化政策과 並行하여 나타났던 開化意識의 成長過程을 그 時間의 變遷을 中心으로 圖式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것은 大略 高宗 17年 (1880年)의 官民 엘리트에 의한 開化政策의 實踐에서 出發하여 1881年의 辛己衛正斥邪와 部分的인 採西思想을 거쳐 1882年의 積極的 採西意識으로 移行되기까지에 時間의 分析을 意味하는 것이다

年月日	上疏者	內容	手段	價值觀	備考
高宗 17年 10月 11日	兵曹正郎 副元植	西洋〔技…奇巧 學…淫邪 朝鮮策略…染邪・侮賢〕	邪教排斥 書院復設	衛正斥邪	斥邪의 反動的 強化
高宗 17年 12月 17日	前正言 許元栻	仁川開港反對 朝鮮策略反對	本固寧邦의 道는國王의 善政에 서	衛正斥邪 (自強理論)	斥邪理論의 現實化
高宗 17年 12月 28日	掌令 李駿善	軍器學造 反對 仁川開港反對	自守保存	衛正斥邪	經濟的自存
高宗 18年 2月 26日	黃南萬人疏 (疏頭 李晚孫)	開化外交反對	儒學強化 (崇儒重道)	衛正斥邪	華夷論과 結合된 宗教的動員
高宗 18年 3月 22日	武科及第 共時中	開化修交反對 (開港=倭의 制約 開化=墮落)	制限通商 洋化嚴禁	衛正斥邪 (倭洋一體)	通商制限

(34) 日省錄: 高宗 19年 9月 14日條(65).

(35) 政院日記 高宗 19年 9月 14日條.

高宗 18年 3月 22日	出 身 黃載顯	開化政策에懷疑, 中原 秩序崩壞에 대한不安	國內政治의 刷新	衛正斥邪 (自強理論)	同年五月의 金淳鎮(慶尚) 柳翼永(京畿) 韓洪烈(忠淸) 丘斥邪에 속한다
高宗 18年 6月 18日	前掌令 郭基洛	倭·洋分離 修交自強認定 西技探擇主張	技術導入 產業強化	衛正·探西	西歐에 대한 部分的承認
高宗 18年 閏7月 8日	江原儒生 洪在鶴	開化政策=主和賣國 邪說汎濫=宗社危機	邪說排斥 賣國臣僚 處刑	衛正斥邪 (倭洋一體)	開化政策에 대한 政治單位間의 鬭爭
高宗 18年 閏7月 8日	京畿儒生 申櫻	開化政策 排斥 主和臣僚	斥邪政策 強化	衛正斥邪 (倭洋一體)	同月의 趙啓夏(忠淸) 高定柱(全羅) 도斥邪에 속한다
高宗 18年 8月 8日	副護軍 趙秉友	倭勢排斥 斥壞·內修主張	內修強化	衛正斥邪 (倭洋一體)	
高宗 18年 11月 30日	草莽臣 宋秉璿	斥倭和=絕邪教 開化(策略·衙門)反對	開化政策의 中止反省	衛正斥邪 (倭洋一體)	
高宗 19年 7月 25日	忠州幼學 金益龍	崇正學·闢異端 武備強化	軍備強化	衛正斥邪	
高宗 19年 9月 3日	禮曹佐郎 李斗永	西歐技術(農兵)의 優勢 量認定	西歐技術 의探擇	探西·衛正 (東道西器)	西歐技術承認
高宗 19年 9月 5日	刑曹佐郎 康鴻舉	外務·通商에 대한 萬 國通行例量認定	統機復設	探西思想 (統治機構)	西歐的制度 部分的承認
高宗 19年 9月 5日	直 謂 朴淇鍾	洋教(邪)排斥 洋器(利)利用	洋技探擇 農·醫藥 甲兵等產業 振興	探西·衛正 (東道西器)	利用厚生
高宗 19年 9月 5日	鴻山幼學 趙聲教	西國機械의 學習利用	西技學習 產業振興	探西思想 (東道西歐)	國家的利益에서 의 探西
高宗 19年 9月 14日	出 身 趙暎朝	積極的門戶開放 通商振興	通商富強 產業振興	探西思想 (生產論)	貿易振興·外貨 獲得에 의한 生產擴大
高宗 19年 9月 6日	前主事 柳宗秀	世界大勢=富強政策 西歐兵器의 優秀性	內資調達 軍備 及生產	探西思想	民族資本에 의한 生產振興

高宗 19年 9月 14日	蔚山幼學 李 敬 權	天下大勢의 一變을 認定「萬國公法」世界觀	參西를 위한豫備防禦之策	探西・參西 (西歐世界觀)	西歐的 世界觀 承認
高宗 19年 9月 14日	前 司 集 金 魯 昇	世界秩序 開港通商} 認定	財用(富國) 政策	參西思想	西歐的 世界觀 承認
高宗 19年 9月 15日	副 護 軍 金 競 鉉	內修政教 外結和好	開化와 義理의調和	自存・探西	自存을 위한 積極外交
高宗 19年 9月 20日	廣州儒生 趙 汝	西歐技術軍制承認 技術學習을 위한 一般 教育	技術導入 國民教育	探西思想	探西의 一般化

※ 上記圖表는 1880年 10月부터 1882年 9月까지 滿 2年間에 걸쳐當時開化問題에 關聯된 上疏文을 整理한 것이다.

※ 거기에 記載된 17篇의 上疏文을 日省錄에서 言時事疏만을 뽑아 기기서 다시 斥邪와 探西를 基準으로 抽出한 것이다.

※ 內容은 주로 上疏文에 表現된 文句를 그대로 使用하였으나 部分的으로는 意譯으로 說明하였다.

※ 日字는 모두 日省錄에 表示된 陰曆日字들이다.

以上의 圖表를 分析해볼 때, 當時官人 엘리드들에 의하여 推進된 開化政策에 대한 反應으로서 나타난 意識의 反響은 대략 初期의 斥邪에서 中期의 部分的 探西(東道西器)로 그리고 그것은 다시 後期의 全般的 探西(參西)로 發展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分析해보면 朝鮮策路의 問題가 등장되기 시작한 1880年 10月부터 1881年 6月까지는 衛正斥邪와 같은 排他意識이 支配의이었다. 그것은 宗儒重道와 같은 宗敎的 信念體系⁽³⁷⁾와 洋化排斥과 같은 危機意識이 함께 結合된 것으로서 西洋은排斥의 對象으로 認定되고 있었다. 洋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와 日本의 要求에 대한 警戒의인 意識은 斥邪意識을 俗洋一體로 더욱 強化시켰다.

그것은 日록 西歐를 承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開化意識에 直結될 수는 없었지만 強力한 外勢排斥과 自發的인 自存意識으로 韓末開化의 方向에 自主的 進路를 模索케 하는 契機가 되었음을 瞽認할 수 없다. 當時의 斥邪上疏에 대략 國政刷新과 制限通商論이 並行되었던 것도 그와 같은 自存에의 意慾이 端的으로 表現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881年 後半부터 1882年 初半까지는 西洋의 教는 邪敎로서 排斥하되 西洋의 技術은 利器로서 받아 들이려는 東道西器의 探西思想이 擡頭되고 있었다. 그것은 西歐觀의 道

(36) 日省錄: 高宗 19年 9月 15 日條(70).

(37)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8. Chapt. 6, "religious mobilization"

와 器로 囚分되기 시작하였음을 意味하며 이와같은 分離는 곧 西歐에 대한 部分의인 認定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西歐의 技術導入을 주로 開化外交에서 求하고 當時 開化外交의 中心的 인 局面。對日關係이었다는 狀況은 倭洋一體라는 全般的 斥邪를 倭洋分離를前提로하는 開化·通商으로 發展시켰다.

다음 1882年 9月 이후는 部分의 採西에서 積極的 採西로 前進하려는 西歐觀의 擴大로 表現되고 있었다. 그것은 積極的 門戶開放論, 貿易擴大論, 生產振興論 등으로 나타났는바, 그意識의 基盤은 곧 西歐的世界觀에 대한 認識의 擴大가前提로 되는 것이었다.

紳士遊覽團의 歸還報告⁽³⁸⁾와 韓·美通商條約의 締結등으로 인한 西歐知識의 擴大와 連結될 수 있는 積極的 採西思想은 우선 西歐의 技術뿐만이 아니라 西歐의秩序 그 自體까지도 承認하려는肯定的인 西歐觀의 確立을前提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그와같은肯定的인 西歐觀의 確立는 西歐의 世界秩序에 參與競爭하기 위한 積極的 採西自強參西思想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西歐的世界觀에 대한 承認은 「萬國公法」⁽³⁹⁾과 같은 새로운 世界秩序에 대한 認識은 있었으나 日本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위 亞細亞의 世界觀에서 벗어나는 「脫亞」⁽⁴⁰⁾의 意識은 그前提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韓國의 對西歐觀의 特性을 찾아볼 수 있다하겠다.

第二節 積極的 採西思想——西歐의 世界觀의 承認

1882年 後半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採西意識의 擴大는 드디어 西歐의 世界秩序를 承認하기에 이르렀고 이와같은 새로운 世界秩序에 대한 事實上의 承認은 採西價值의 幅(scale)을 더욱 擴大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採西價值의 擴大와 함께 그러한 世界秩序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기 위한前提로서 自強意識의 強化가並行되고 있었다.

즉 開化價值의 幅은 技術의 導入習得뿐만이 아니고 近代의인 施設 制度에까지 擴大되었으며 이것을 推進하기 위한 開化에의 態度도 더욱 積極的이고 進取的일 것이要求되고 있었다.

高宗 19年 9月 京居幼學 高穎聞은 그의 時務上疏에서 다음과 같은 革新的인 提案을 列擧하였다.

첫째, 資極的西歐技術의 導入——西歐各國에 使節을 파견하여 그 風物을 살피고 友誼을伸長시킨 다음 각技術에 精通한 教師를 請하였다 全國의 上下人民들에게 새로운 技術을 習得도록 할 것.

둘째, 新로운 制度 및 施設의 活用——政府機構와는 別個로 公議堂을 新設하여 時務를 잘

(38) 前易「聞見事件」第一冊(閔種默)参照。

(39) 日省錄 高宗 19年 9月 14日條(65)蔚山幼學 李敬權 上疏。

「…今天下大勢 萬國共立公法 相守私好者 天道周星 一變氣數 如之何 獨一東方 自守若危 偏受各國之怨乎…」

아는 人士를 選擧り 求하여 不次陞用⁽⁴¹⁾으로 政事論議에 參與케 할 것. 또 商會所와 國立銀行을 設置하여 邸下에 經商大賈를 불러들여 便利與否를 잘 議論케 하되 그 損益에 따라 徵稅케 할것. 海軍을 特設하여 仁川을 海軍重鎮으로 삼을 것. 巡查制를 實施하되 五家編法으로 五十戶를 一區, 各區에 區長一人을 選定하고 그 區長指揮下에 每區 四名의 巡查를 두어 盜賊・水火・酗酒(주정을 피움)의 弊를 防止케 할 것.

셋째, 新로운 法 및 政策의 實施——採礦・通貨政策을 實施하여 法에 따라 採礦을 奬勵하고 三種 貨幣를 年數制限없이 계속流通시켜서 貨幣流通을 盛하게 시켜 遊食者를 없앨 것. 또 稅法을 改定하여 冗職은 없애 버리고 雜貢은 新式稅法으로 하며 祿俸은 厚하게 定하되 生路를 넓게 열어서 晉紳士庶로하여금 각기 그 業에 安定토록 할 것.⁽⁴²⁾

이것은 곧 西歐文化의 積極的 輸入을 基盤으로 한 進取的 開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生產과 技術의 問題는 流通財政稅法의 問題로 까지 發展하였고 政治的 採西는 近代議會制의 採擇으로 까지 發展하므로서 採西의 基盤은 制度化 또는 一般化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같은 開化意識의 成長과 並行하여 朝廷에서는 1882年 10月 드디어 西歐汽船의 導入을 公共연히 許容하기에 이르렀다. 즉 各國通商時에는 火輪船이거나 帆船이거나를 莫論하고 民間人이 이를 購買하여 公私用에 구애됨이 없이 使用토록 舟橋司에 命令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과 함께 西歐의 火輪船이나 電信線 그리고 大砲등의 効用을 認定하면서 西歐文明의 本質은 오히려 耶蘇教와 같은 枝葉의인 것이 아니고 兵器 機械와 같은 工業生產品에 있다는 새로운 西歐文明觀이 나타나고 있었다.

即 高宗 19年 10月 典籍 卞鑒은 그의 時務上疏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西洋에 대하여) 그 根本은 研究하지 않고 먼저 그 枝葉의인 것만을排斥하고 있다. 그것은 舊聞을 굳게지키고 오늘날 通行되는 「道」를 宪明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洋學에 染色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지금 天下에 通行되는 萬國公法조차도 邪學이라고 論斥하지마는 이들 海國圖志萬國公法等 書冊은 四都八道에 刊行하여 퍼뜨릴 것이다. 耶蘇教 그 自體는 嚴禁해야 할것이로되 그밖의 器用의 利나 醫農의 妙는 人道에 해롭지 않고 產에 有益한 것이니 이를 學習採用해야 하며 또 採金하는 器械등도 모두 海外의 新書들에 掲載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오늘날 救急의 用이 되는 것이다.」⁽⁴⁴⁾라고 主張하였다.

(40) 「脫亞」의 概念은 明治維新 期 日人學者 福澤諭吉이 使用하기 시작했다. 丸山眞男 日本の思想 岩波新書 43.4 東京 岩波書店 1968, pp.12~14.

(41) “不次陞用”(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起用함) 그 自體가 選舉公務員의 性格을 말해 주는 것이다.

(42) 日省銅 高宗 19年 9月 22日條(19).

(43) 日省銅 高宗 19年 10月 14日條(40).

(44) 日省銅 高宗 19年 10月 7日條(15~16).

그 玄張은 어찌까지나 西洋의 教와 그 器를 區分하여 그 器를 받아드리려는 東道西器의 採西思^想이 分明하지만 여기서의 對西歐觀은 커다란 變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西歐文明의 本質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즉 從前의 部分的 採西意識은 西歐文明의 中心을 그 道라는 立場에서 評價하고 있었기 때문에 初期의 東道西器는 西器의 採擇보다는 주로 西學의 排斥이란 側面에서 發展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段階에 이르러 東道西器의 採西思想은 이미 西歐文明의 本質이 그 產業能力에서 認識되고 있었기 때문에 西器를 西歐價值를 說明하는 全體로 承認하고 있었다. 따라서 採西의 意味는 주로 西器의 採擇이란 單一한 目的으로 收斂되고 그러한 西器의 採擇은 곧 全般的인 採西로 解釋되고 있었다.

여기서 西歐를 近代的 物質文明을 가져온 產業化의 本質에서 理解되기 시작 하였고 그것은 그후의 開化意識의 方向를 西歐產業技術의 積極的 採用과 朝鮮朝의 產業能力向上이라는 產業化⁽⁴⁵⁾一面으로 促進시켜 주었다.

그러던 立場은 다음과 같은 上疏에서 더욱 뚜렷하게 浮刻되고 있었다. 즉 出身 尹善學은 高宗 19 年 12 月에 올린 上疏에서

「…西去이 나오자 그 器械의 精, 富國의 術은 비록 周나라를 일으킨 呂尚, 蜀나라를 다스린 諸葛孔明이 나와도 다시 더불어 論할 수 없다. 이제 그 輕利한 西法을 利用치 않고 古制의 頑鈍한 專用한다면 富強할 길이 없을 것이다」⁽⁴⁵⁾라고 主張하여 西洋의 技術文明・富國之術은 東洋의 傳統으로서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으로 認定하였다. 그것은 곧 西歐의 世界觀을 承忍하기 위한 韓國의 「脫亞」意識의 部分的 表現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傳統的인 儒教의 倫理는 永遠不變의 道理임을 強論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西歐文明의 本質을 그 優勢한 技術文明에서 把握하는 한편 우리의 本質을 傳統의 倫理文化에서 지킬 것을 主張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舟車軍農 器械의 便民利國한 것은 外形的인 것으로서 國家에 有益하다. 그러니 俊才를 널리 뽑아 造械의 官을 두고 海外에出入시켜 그 製造法을 배워 오게 하여 急速히 그 効用을 보게 하면 才智精巧가 다른나라를凌駕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 할 수 없다」고 主張하여 적어도 西歐文明의 本質로 認識되는 產業ability을 우리의 積極的 採西로서 배워 갖출 것을 提議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西法에 의한 富國強兵思想은 1883 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西歐의 秩序에 參與하기 위한 積極的 參西思想으로 發展하였다. 그것은 「萬國公法」을 基盤으로하는 西歐의 國際秩序에 대한 事實上의 承認으로 解釋될 수 있기에 여기서 開化意識은 亞細亞의 世界觀을 벗

(45) 日省錄 高宗 19 年 12 月 22 日條(60~61).

~어나고 있었나 하겠다.⁽⁴⁶⁾

즉 高宗 20 年 3 月 前掌令 安翊豐은 그의 上疏에서

「…外交에 誠信을 다하고 特別히 才德이 많고 時務에 體達한 사람들을 뽑아 各國에 파견하여 公法대교 條約을 맺게하고 年少한 사람 가운데서 聰敏하고 智巧한 사람을 뽑아 異制를 배워 오게 하자」⁽⁴⁷⁾고 提議하였다.

즉 이 段階에 이르러 開化意識은 對外的으로는 近代的 國際秩序에 參與하고 對內的으로는 西歐的 制度化를 實踐하려는 보다 包括的인 西歐化의 樣相으로 發展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1882 年 9 月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西歐的 世界觀의 形成過程을 圖表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年月日	上疏者	信念體系	手段	世界觀	備考
高宗 19年 9月 22日	王居幼學 高頤聞	西歐秩序에 積極參與	積極外交 制度改革	西歐的 世界秩序承認	
高宗 19年 10月 7日	吳籍 金鑾	西歐의 本質을 產業能力에서 인식	西歐技術에 의한產業化	「萬國公法」 世界觀	西歐의 本質을 承認
高宗 19年 12月 22日	朴身 王善學	富強之道=西法採擇	西歐遊學 產業振興	中華的 世界觀 의 포기	西歐 技術文明의 優越을 認定
高宗 20年 3月 11日	前掌令 安翊豐	西歐秩序에 積極參與 制度的西歐化	列國との 條約 西歐의 制度化	「萬國公法」 世界觀	採西의 普遍化

※ 資料는 日省錄에서 拔萃

※ 日字는 上疏가 登徹된 陰曆日字임.

이상과 같이 西歐的 世界觀으로 까지 發展된 開化意識을 그 開化價值의 幅(scale)을 基準으로 하여 다시 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그것은 西歐的 秩序를 전적으로 排斥하던 全面的 排他意識으로부터 西歐秩序를 전적으로 승인하게되는 全面的 採西意識으로 까지의 肯定的인 發展過程에 대한 時間의인 分析인 바 이와같은 開化意識에 대한 時間의 趨向分析은 곧 開化意識의 擴大過程에 대한 段階의 性格究明을 意味한다.

1880年年末경부터 1882年末까지⁽⁴⁸⁾ 政院에 登徹된 上疏中 주로 時事疏 時務疏와 같이

(46) 芳賀 昌: “幕末明治初期に 於ける 獨立と 自由について一特に 西歐觀と 對アジア意識を 中心にして —”， 東亞細亞近代史研究，大塚歴史學會編，1967, pp.101~105 여기서 그는 “中國中華觀の 崩壊と 萬國公法”이란 題下에서 說明하고 있다.

(47) 日省錄 高宗 20 年 3 月 11 日條(16).

(48) 1880年末은 주로 統機設立과 連結시키고 1882年末은 주로 韓美修好條約 締結以後에 連結시켰다.

開化問題에 直結된 内容으로서 26篇을 抽出하였으며, 開化價值의 幅으로서는 改革이나 採西에 대한 主張을 大略 9個의 項目(開化價值)으로 定하여 採西에 대한 主張이 1~3個項目에 머물을 때는 保守的 開化(preservative)로, 4~6個項目일 때는 維新的開化(innovative)로, 그리고 7~9個項目일 때는 變革的 開化(transformative)로 規定해 보았다.⁽⁴⁹⁾

그리고 上疏文의 内容分析上 (content analysis) 그 採西主張에 대한 用語가 統一되어있지 않고 또 그 主張의 方向도 多樣하여 開化價值에 대한 正確한 項目抽出이 困難하기 때문에 開化價值의 幅을 대략 다음과 같은 3個의 範疇로 再調整하였다.

즉 開化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negative), 開化에 대하여 兩面的 態度(ambivalent) 그리고 開化에 대하여 積極的 態度(positive)등으로 三分하였다.

消極的 態度는 勝正斥邪가 거기에 該當하고 兩面的 態度는 東道西器와 같은 部分的 採西인 바 이 部分的 採西는 技術에 대한 採西와 制度에 대한 採西로 二分하였다. 여기서 制度에 대한 採西는 技術에 대한 採西를 包含하는 보다 包括的인 採西의 意味로 解釋하였다. 그리고 積極的인 態度는 西歐的世界秩序에 대한 承認過程으로서 그것도 「萬國公法」 世界觀의 確立와 西歐文明優越論의 認識으로 兩分하였다.

年月日	上疏者	消極的 (negative)	兩面的 (ambivalent)		積極的 (positive)		備考
			技 術	制 度	萬國公法	西歐優越 承認	
高宗 17年 10月 11日	兵曹正郎 劉元植	○					衛正斥邪
高宗 17年 12月 17日	前正言 許元栻	○					"
高宗 17年 12月 28日	掌公 李駿善	○					"
高宗 18年 2月 26日	萬人疏 嶺南儒生	○					"
高宗 18年 3月 22日	武科及第 洪時中	○					"
高宗 18年 3月 22日	出身 黃載顯	○					"
高宗 18年 6月 18日	前掌令 郭基洛		○				○ 東道兩器 (西法採擇)

(49) Ole R. Hols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ddison Wesley Company, Calif., 1969, 參照。

(50) 李君伯“韓國近代化의 基本性格” 震檀學報 二十三號, 1962, p.195.

高宗 18年 閏7月 8日	江原儒生 涉在鶴	○					○ 衛正斥邪 (伏閣上疏)
高宗 18年 閏7月 8日	京畿儒生 白 櫻	○					○ 衛正斥邪 (伏閣上疏)
高宗 18年 8月 8日	昌 護軍 走秉友	○					○ 衛正斥邪 (內修外攘)
高宗 18年 11月 30日	車 莽臣 牙秉璿	○					○ 衛正斥邪
高宗 19年 7月 25日	忠州幼學 金益龍	○					○ 衛正斥邪 (關異端)
高宗 19年 9月 3日	祖曹佐郎 李斗永		○				○ 東道西器 (西法稍勝)
高宗 19年 9月 5日	升曹佐郎 周鴻舉			○			○ 東道西器 (統機=萬國通行例)
高宗 19年 9月 5日	直講 木淇鍾		○				○ 東道西器 (利用厚生)
高宗 19年 9月 5日	洛山幼學 李聲教		○				○ 東道西器 (西器=利)
高宗 19年 9月 6日	首主事 裴宗秀		○				○ 東道西器 (西器生產)
高宗 19年 9月 14日	甘身 走啖朝			○			○ 東道西器 (貨幣制度) (直接生產)
高宗 19年 9月 14日	首司果 金魯昇				○		○ 參西思想
高宗 19年 9月 14日	嘉山幼學 李敬權				○		○ 「萬國公法」承認
高宗 19年 9月 15日	昌護軍 金競鉉			○			○ 制限的外交
高宗 19年 9月 20日	慶州儒生 走 汝		○				○ 西技導入의 一般化
高宗 19年 9月 22日	京居幼學 高頴聞			○	○		○ 西歐的 世界秩序 承認

高宗 19 ¹ 10月 7日	典籍 下鑒		○		○		○ 東道西器 ○ 萬國公法承認
高宗 19 ¹ 12月 22日	出身 尹善學		○			○	○ 中華世界觀의 崩壞
高宗 20 ¹ 3月 11日	前掌令 安翊豐			○	○		○ 萬國公法承認

이상의 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6 篇의 上疏中 開化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 (negative)가 11, 兩面的 態度(ambivalent)가 技術—8, 制度—5, 計 13 積極的 態度 (positive)가 6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時間的으로 分析해보면 1882年 9月 이전의 12篇은 消極的 態度 11에 대하여 兩面的 態度 1였던데 비하여 同年 9月 이후의 14篇은 兩面的 態度 12에 대하여 積極的 態度 6이었다.

이것을 다시 그一般的인 趨勢에서 論한다면 1882年 9月 전까지만 하여도 開化에 대하여 消極的인 態度가 거의支配의되었으나 그와같은 消極的인 態度는 점차 그 自生的인 發展을 통하니 部分的인 採西로 進行하였고 그리하여 1882年 9月 以後에는 採西思想이 一般化되어갔다. 바, 그와같은 採西思想은 1882年 末期에 이르러서는 部分的인 採西로부터 積極的인 採西로 進行하였다음을 알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開化에 대한 意識狀況의 變遷은 적어도 當時 社會 全構成員의 그것을 說明할 수 있는一般的인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는 그와같은 意識狀況分析에 抽出된 上疏者들의 社會身分을 一瞥해봄으로써 開化意識의 問題를 그 政治單位와 다시 連結시켜 보기로 하겠다.

이때 開化에 否定的이던 斥邪論者 (11名)들의 社會身分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總數	現職者		前職者		出身	儒生
	五品以上	六品以下	五品以上	六品以下		
11	3				1	2

※ 出身에는 武科及第도 包含 ※ 儒生에는 幼學도 包含

한편 採西思想家 (15名)들의 社會身分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總數	現職者		前職者		出身	儒生
	五品以上	六品以下	五品以上	六品以下		
15	1	4	2	2	2	4

以上의 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開化나 斥邪意識이 明確하게 連結될 수 있는 社會身分階層은 없다하겠다. 다만 斥邪意識은 在野士林이 보다 큰 比重을 차지하였음(55%)에

反하여 開化 意識은 政策에 關聯이 있는 官人們이 보다큰 比重을 차이하고 있었음(60%)을 대략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1880年代의 開化意識은 그 政治單位 (political unit)와의 相關關係보다는 그 時間的인 經過에 따른 趨向分析이 보다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第三節 開化意識과 自主·獨立思想

1876年의 修好條約은 西歐的 秩序를 극히 制限的인 意味에서 法律的으로 (de jure) 承認한 것이었다. 그러한 修好條約을 西歐와의 接觸에 대한 하나의 制度의인 機會로 認定하려할 때⁽⁵⁰⁾ 採西를 一心으로하는 開化의 問題는 부득히 그러한 修好條約을 實踐하는 開港體制와 連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나 西歐와의 接觸에 대한 최초의 機會로 밟어드린 開港의 形式이 西歐를 背定的으로 受容하려는 實質上의 承認이 아니었다는 대에서 問題는 提起되고 있었다.⁽⁵¹⁾ 여기서 韓民族의 開化過程⁽¹⁾는 본래 부터 外勢의 介入이라는 否定의in 要素를 감안해야만 했었고 따라서 開化過程에 나왔던 意識의 複雜한 分化는 그와같은 否定의in 部外의 要素속에서 開化를 自己 것으로 하기 위한 意識의 自生的 展開過程이었다.

즉 西歐에 대한 全面的 排斥(外勢의 否定)에서 部分的 採西(開化意識의 自生的 摧頭)로, 다시 部分的⁽¹⁾ 採西에서 積極的인 參西(開化意識의 成熟)로 發展하였던 一聯의 展開過程은 그와같은 意識의 自主的in 成長過程을 說明해주는一般的 形式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開港體制에서 나타난 部分의in 改革내지 採西政策은 단순한 政策의 側面에서 만이 아니고 內面의으로 成熟해가는 意識의 成長이 並行하고 있었음을 認定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와같은 開化意識의 成長은 대략 在野의 土林들 보다는 官人子魯(現職 或은 前職)에서 더욱 현저하였음은 앞의 圖表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었다. 이와같이 1880年代 官人子魯에서 成熟되기 시작한 開化意識이 反抗엘리뜨의 性格을(counter-élite) 띠고 果敢히動態化하였던 것이 곧 甲申政變이었다.

그러나 그 甲申政變은 그것을 主動한 反抗 엘리뜨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社會階層에서 形成된 것이 아니고 既存엘리뜨의 一部에서 그대로 調達되었다는 保守的 性格과 또 大衆의 意識基盤을 吸收할 수 있는 大衆動員의 (mass mobilization) 側面이 缺如되었다는⁽⁵²⁾ 점, 그리고 더 根本的으로는 거기에 自己勢力 侵透를 피하는 日本의 劢力이 否定的으로 結合되었다는 점 등으로 失敗로 돌아갔다.

(51) 日省錄 高宗 13 年 2 月 6 日條(19~24). 接見大官 申櫟 召見條. 즉 “匪洋伊修論”이 그 代表의 例이다.

(52)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8, (chapt 6 “mass mobilization”)에 甲申政變은 除外되어 있다.

(53) 한우근 “前揭論文” pp.134~136

물론 巨變의 主動勢力 그 自體에 自主意識의 基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⁵⁴⁾ 여하튼 그政變失敗의 結果는 開化過程에 있어서 自主의 問題를 提起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衛正斥邪와 같은 開化에 대하여 消極的이던 民族意識에 肯定的인 意味를 賦與해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排他的 感性에 基調를 둔 自主意識의 一主流는 東學思想의 流布와 함께 倍加되어 갔다.

그와 같은 意識의主流는 이미 高宗 18年 (1881年) 嶺南·湖南의 山間에 넘나들던 火賊들 사이에서 『擧義伐倭』⁽⁵⁵⁾한 檄文으로 나타났었고 그것은 드디어 1893年 東學敎徒의 伸冤運動으로서 『報恩聚會』에서 「斥倭洋倡義」와 같은 政治活動으로까지 展開되었던 것이다⁽⁵⁶⁾.

이와 같은 自主意識은 後日 보다 積極的인 開化意識과 結合하여 近代的 民族意識으로 發展하기 위함 初期過程으로 說明될 수 있겠다.

즉 東學 軍蜂起當時 清國援兵을 拒絕한 領府事 金炳始는

「收歛政治」에 끗이겨百姓들이 일어난 것을 東學徒들에게 責任을 돌려 無數히 殺傷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여기에 대하여 清兵까지 請援한 것은 또 하나의 잘못이다. 他國軍隊를 빌려서 吾國民衆을 害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⁵⁷⁾고 主張하여 同質의 紐帶意識에 基盤을 둔 民族意識의 一端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同胞主義는 東學運動에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던 全琫準의 思想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⁵⁸⁾ 그보다 더 먼저는 1970年代 開港을 反對하던 斥和意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17年 1月 京畿 江原 兩道儒生들이 올린 絶和疏(疏首洪在龜)에는
「吾君은 곧 父母의 宗子이고 大臣은 宗子의 家相이며… 이 모두는 곧 同一家의 天倫인 즉 이제 狼狽顛覆의 患을 當하여 어찌 안연히 忘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위 上를 積고 그 아래 (下)를 餘하여 民生을 기르고 兵食을 다스린다면… 그 自強의 劢가 족히 外侮를 막 어낼 수 있다」⁽⁵⁹⁾고 主張하며 排他斥和의 基盤을 民族意識의 一端과 連結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開化에 대한 새로운 反省과 自主的 民族意識의 漸高 속에서 그러한 開化와 自主。 대한 兩面的 要求를 實踐하려 했던 것이 여하튼 甲午更張이 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制限된 官人們의 政策을 통한 維新이었고 또 그것은 日本이라는 外勢의 強迫下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그 内面을 지배했던 意識狀況에서는 開化以外에 自主의 問題가 強하게 浮刻되고 있었던 것은 또 한 사실이었다.

(54) 朴殷植, 獨立運動之血史, 서울, 서울新聞社出版局 1946, 序文参照.

(55) 日省錄 高宗 18年 11月 6日條(10~12).

(56) 韓淮勸 “前揭論” p.136

(57) 『文11午實記』 5月初 9日條.

(58) 『東11亂記錄』 p.383. “全琫準上書中” “告示文”

(59) 重叢集 卷三 疏 “絶和疏”

그것은 夏張推進過程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1年 6月 27日 更張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時原任大臣 會議에서 右議政 鄭範朝는 「…國家典章을 一朝에 更張한다하니 그것은 반드시 善變한 연후에야 그 効力이 있을 것」 이라고 主張하여 外勢에 의한 拙速한 改革에 慎重을 表하였고 領府事 金炳始는 「更張이 啊할지 臣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國事が 이와 같이 창망하기 主辱臣死의 義로 다만 痛恨이 切切할 뿐이다」라고 主張하여 更張보다도 外勢의 侵入에 의한 國家安危와 自主의 問題를 더욱 切感하고 있었다.⁽⁶¹⁾

한편 그와 같은 自主意識의 問題는 改革을 推進하던 更張推進過程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1年 6月 28日 機務處 最初 議案에서는 「平民參政」과 같은 近代的 政治改革의 內容을 包括하고 있었던 한편, 清國과의 條約改定과 列國外交를 再定立하려는 새로운 國際關係의 摸芽이 들어 있었다.⁽⁶²⁾ 그것은 곧 清國과의 藩屬關係를 自主的 對等關係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西歐的 國際秩序에 參與하기 위한前提로서의 中原의 世界觀의 崩壞를 意味하는 것 이었다.

여기서 그와 같은 中原의 世界觀의 崩壞를 할 수 있는 脫亞的 意識은 一便으로는 西歐의 世界觀의 確立와 連結됨으로써 開化의 意味를 지녔고 또 一便으로는 藩屬關係로부터의 主觀的 獨立와 連結됨으로써 自主의 意味를 함께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開化過程에 따른 自主意識의 問題는 다음과 같은 前刑曹參議 池錫永의 上疏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즉 更張이 바야흐로 推進되어가던 高宗 31年 7月 그가 올린 時務上疏에서는 「…壬辰의 亂으로 당한 유린이 그 열마이며 丙子의 盟으로 인하여 입은 凌辱이 그 열마이 기에 自強의 方便과 禦侮의 策略에 미치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날 外人們의 強勸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 民心에 痘이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清國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日本을 疑心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 … 淳國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없고 日本을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의심을 둘리면信心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둘리면 勇心이 생긴다. 信과 勇으로 衆心을 合하면 安邦定國의 積기가 손뒤집는 것과 같을 것이다. … 오늘날 百姓들이 일찌기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같은 更張을 당하여 그보다 먼저 白성을 위하여 雪忿의 命을 내리는 일이다」⁽⁶³⁾라고 主張하였다. 그것은 곧 更張보다도 清·日 兩國의 干涉에서 벗어나 自強을 폐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重要하다는 自主意識의 發露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當時開化過程에 結付되었던 危機意識과 그것을 克服하기 위한 自主自強意識을 다

(60) 日省錄 高宗 31年 6月 22日 召見日本公使條

(61) 日省錄 高宗 31年 6月 27日 召見時原任大臣條(59~60)

(62) 日省錄 高宗 31年 6月 28日 機務處議案條(70).

(63) 日省錄 高宗 31年 7月 5일 (11~12).

「 음과 」은 前承旨申箕善의 上疏에서 보다 짐약적으로 表現되고 있었다.

「臣이 듣기에 日人们이 우리에게 自主를 권하고 우리에게 開化를 가르친다한다. 自主가 어찌 좋지 않으며 開化가 어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自古로 일찌기 民心이 흩어지고 法紀가 풀어져 國脈이 문란해 가는데 능히 自主하고 開化한 일이 있었는가? 自主를 잘하려면 먼저 自主의 势를 세우고 그 이름에만 汲汲치 않으며 開化를 잘하려면 먼저 開化의 實에 힘써 그 形跡[1]만 介意치 않는다. 오늘날 異類外兵이 宮闈을 凌犯하고 要地에 據守하여 生死安危가 저들의 掌握下에 있으면서 다만 開國年號만 標榜하여 天下에 自高한다고 하여 족히 自主할 수 있겠는가? 안으로는 變怪가 百出하고 밖으로는 妖亂이 滔天하여 八域이 沸騰하고 法紀가 蕩蕩無存[2]데 다만 官制만 變更하고 官衙만 바꾸어 外國에 모방한다고 하여 족히 開化할 수 있겠는가? …… 소위 開化란 것은 公道를 恢張하고 私見을 參酌하여 百姓으로하여 游食치 않게 하고 宦吏로 하여금 尸位가 되지 않게 하며 또 利用厚生의 資源을 열어 富國強兵의 術을 다하는 것 뿐이다. …… 요컨대 古來로 外國으로 부터 制約를 받으며 능히 나라를 이룬 자 없으므로 人心과 衆論을 어기고 本과 漸이 없이 능히 新法을 行한 자 없다. 저들이(日本) 과연 好惡에서 나왔다면 우리에게 難行을 強行치 말고 우리의 內政을 干涉치 말 일이다. ……民心을 굳애하고 時宜를 參酌하여 自主의 势를 점차 공고히 하여 서서히 開化의 實로 나갈 일이다. 今后으로 하여금 主權을 빼앗지 않도록 한 연후에 우리에게 維新의 効가 있을 것이다…」⁽⁶⁴⁾

여기서 開化는 自強을 中心으로 하는 自主와 연결되고 그와 같은 自主는 外勢의 干涉으로부터 自主權을 確保하려는 政治的 獨立과 利用厚生과 같은 韓民族의 自生的 歷史意識과 結合되느 있었다.

그것은 開化가 國內의으로는 自主權의 確立과 國際의으로는 民族國家의 並列的 共存을 理想으로 하는 近代的 民族國家意識으로 指向하고 있었음을 意味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韓民族의 開化는 外勢의 強壓과 侵略의 葛藤속에서도 歷史意識과 結合된 自主的民族意識의 成長過程에서 進行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64) 日省錄 高宗 31年 10月 3日條(6~8). 前承旨 申箕善 疏陳時務 條.